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24. 1. 1. ~ 2024. 12. 31.)

공증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제시

1 법무부와 제9차 공증실무협의회에서 공증 제도 개선 건의사항 제출(2024. 3. 15.자)

- 협회는 법무부와 2024. 3. 22.(금) 개최한 제9차 공증실무협의회에서, 협회가 2024. 3. 15. 자로 법무부에 제출한 공증서류에 대한 날인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한 공증인의 사임, 퇴직과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의 사항 등을 다시 한 번 공식 건의함.

● 협회 측 건의사항

〈공증협 제2024-19호(시행 2024. 3. 15.)〉
중 발췌

A. 공증 서류에 대한 『날인제도』 개선방안 건의

I. 논의 배경

2023. 8. 18. 협회에서 개최한 서울지

역 권역별 회원 간 간담회 시, 회원과 사이에 공증사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였는바, 회원으로부터 번역문 인증 시 서명날인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음.

II. ‘날인’의 의미

1. 날인

날인이란 인장을 압날하는 것으로서 인장은 성명이 모두 있거나 성 또는 명만 있어도 되지만, 성명과 전혀 다른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서류에 날인을 하는 이유는 그 서류의 작성자(예: 확인인, 진술인, 양도인, 양수인, 서약인 등)를 특정하고 날인자가 서류의 내용 또는 작성을 승인하는 의미 또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내용을 승인하는 의미를 가짐.

2. 서명, 기명

작성자 특정과 서류의 내용 및 작성을 승인했다는 것을 표현(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서명이 있음. 서명은 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자서)으로서 성명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림체로 쓰는 서양식 사인은 서명이 아님.

참고로 기명은 성명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므로, 꼭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자필 자서가 아니라도 무방하며 타자로 치거나 워드 인쇄, 고무인 날인, 명판 또는 타인의 대필도 기명에 해당함. 따라서 기명은 서류의 작성 주체나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기명만으로 기명자가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작성 또는 내용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3. 날인제도 폐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볼 번역문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 시 인장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날인을 할 수 없어 공증을 받지 못하여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역문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 시 날인제도를 폐지해야 할 필

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III. 번역문 인증 시 필수적 날인제도의 폐지

1. 번역문 인증의 의의

번역문 인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또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공증인은 위 서약서의 진성성립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법으로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임. 다만 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약서와 인증서를 아예 한 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2. 번역문 인증 시 번역인 또는 촉탁인의 필수적 날인제도의 폐지

현행법은 번역인 또는 촉탁인이 서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공증서식의 사용에 관한 규칙 제33조), 자필서명 뿐 아니라 날인이 추가로 필요함[단,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날인 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음.].

그런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되고, 본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사서증서를 작성하여 촉탁하는 경우 ‘날인’ 없이 ‘서명’만으로 촉탁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그렇다면 번역문 인증의 경우 번역인 또는 촉탁인이 서명날인 하는 부분은 사서증서의 일종인 서약서 부분이므로 다른 사서증서와 달리 반드시 번역인 또는 촉탁인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서명’만으로 행위자로서 동일성 표시 및 증서 확인 후 이의 없음을 승인했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번역문 인증 시 원문, 번역문, 번역능력 입증자료, 신분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도장을 소지하지 않아서 번역문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항의를 종종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내국인을 외국인과 이유 없이 차별하는 불합리함도 있음. 한편 번역문 인증 시 간인의 편의를 위

하여 번역인 또는 촉탁인의 날인을 허용함이 타당하므로 번역인 또는 촉탁인의 필수적 날인제도를 폐지하고 번역인 또는 촉탁인의 선택에 의하여 ① 서명 또는 ② 서명날인 제도로 개선함이 타당함.

IV. 공정증서 작성 시 필수적 날인제도 폐지

1.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 시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등)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참석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참석자는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함(공증인법 제38조). 이러한 내용은 공정증서 서식에 ‘증서 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별지 제32호 서식)’고 되어 있는 바, 참석자는 증서 원본에 직접 손으로 자신의 성명을 적고 날인하게 되어 있음. 이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은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공정증서 작성 시 관계자의 필수적 날인제도 폐지

위와 같은 참석자가 증서 내용에 의의가 없다고 승인하는 의미 및 승인자가 누구인지는 참석자의 자필 서명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수적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할 경우에도 서명만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서류의 내용을 승인했다는 표시로는 자필서명이 가장 확실한 것임. 그러므로 서명만으로도 그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날인을 요구하여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공정증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추후 위조 등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명 이외에 추가로 사인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 관계자의 필수적 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① 서명날인 또는 ② 서명사인 제도로 개선함이 타당함. ☒

B. 공증인의 사임, 퇴직과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I. 문제의 제기

최근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공증인 사임(또는 퇴직)과 신규 공증인의 임명에 대한 제도개혁 건의안’을 받았음. 이에 공무원 공증업무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현행 법무부 공증인 선발·임명 방식은 공증인이 사임 또는 정년 퇴임(인가공증인은 인가 취소)하는 경우 공증인의 사임 신고 → 법무부 면직 처분 → 사무실 정리, 서류 이관 → 법무부 모집공고 → 적격심사 → 신규 공증인 임명 과정을 거침.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임명공증인이 업무를 시작하는데 최소 2~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던 고객의 입장에서는 공증인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받아왔던 공증서비스를 신규 공증인이 임명될 때까지 받지 못하는 불만과 특히, 집행문 부여가 수시로 요구되는 공정증서의 경우 면직된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소지한 고객은 공증업무 공백기간 동안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혹은 협회에 문의하여 인계받은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큰 불편과 번거로움이 따름.
이에 더하여 만일 면직된 공증인이 지방 중소도시 유일 공증사무소(예컨대, 당진, 서산, 제천, 김천, 경주, 포항, 양산,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정읍 등)로서 서류를 인계받을 인근 공증사무소나 지정공증인이 없는 지역의 고객에의 경우에 ‘공증업무의 단절’, ‘공증의 신뢰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공증을 받거나 집행문을 받기 위해 생활권이 다른 인근 도시로 가야 하는 큰 불편함이 따르며, 이러한 사태는 공증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법무부,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

II. 개선책

1. 현행 공증인 임명방식에 내재한 공증업무의 단절, 공증의 신뢰 저하라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공증인에 대한 면직 처분과 신규 공증인의 임명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임.

현재 공증인 임명제도는 지역별 정원제가 정착되어 있고, 공증인 모집 공고도 결원이 생긴 지역의 공증인을 모집하는 방식이므로 신규 공증사무소는 문을 닫는 공증인이 있던

지역에 설치하거나 심지어 기존의 공증사무소를 그대로 인수하여 공증사무소를 여는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 면직을 신청한 공증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신규 공증인 모집을 거쳐 임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명 처분과 동시에 한다면 공증업무의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년에 이르렀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려는 공증인도 법무부가 새로운 공증인을 임명하여 본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예상하여 사임 신청을 하고 그 동안 업무도 정리한 후 새로운 공증인에게 서류 및 업무 전반을 인수인계할 수 있으므로 공증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이 방안은 공증의 연속성 측면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기에 협회에서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한편 최근 법무부의 공증인 공모제도 시행 전 일부 공증사무소의 경우처럼 사임하려는 공증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공증사무실을 인수하려는 변호사를 물색하여 본인은 사임 신청을 하고 물색한 변호사로 하여금

임명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인수인계하는 방안도 있음.

주된 논거는 공증사무소는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의 공증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공증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사정으로 인해 공증사무소는 가급적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보는 것이 고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공증사무소를 몇 달간 폐쇄하는 것보다 사무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증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에 위 방안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

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 공증업무에 대해 사인 사이의 거래처럼 인수 당사자 사이에 권리금조의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법무부가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도시 공증사무소의 경우 지원자가 많을 수도 있으며 공증인 정원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증의 공공성, 공무의 엄결성 측면에서 법무부에게 이 방식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

은 문제가 있음.

본 사안을 문제 제기한 공증인은 현재 공증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심지어 직원 경비 포함하여 사무실 유지도 힘든 공증사무소도 나타나고 있기에 실제 권리금이 형성되어 거래될지도 의문이기에 서로 인수인계하려는 당사자들이 있을 경우 권리금 수수가 법조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영업양도, 양수를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법무부가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함.

※ 첨언

신규 지원자가 거의 없고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면직 예정 공증인이 후임자를 물색하여 사무실을 인수인계할 수 있게 배려할 것 외에도 창고 설치비 국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권리금은 창고 설치 비용 상당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1인 공증인 사무소의 경우 이에 더하여 협회 차원에서 입회비 할인, 부책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C.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유언대용신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 관한 건의사항

I. 논의 배경

협회는 2023. 8. 18. 서울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들로부터 공증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언공증의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등을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등 공증 직역 확대방안 마련을 요청받았기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음.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상속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신탁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근거 규정(제59조)을 신설하였음.

II. 유언공증의 장점 - 유언대용신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유언자가 유언공증 후 재산의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함

유언공증은 유언 이후에도 상속개시 전에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전혀 제한

이 없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됨.

2. 철회의 자유

유언공증은 유언대용신탁과 달리, 유언자에게 철회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에, 유언대용신탁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 신탁계약의 변경 및 종료권 행사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신탁법 제59조 제1항 단서, 제88조 제1항 단서, 제99조 제4항). 피상속인(유언자)의 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생전 약정의 효력을 일관되게 부정해 온 종래 대법원 판례(유언공정증서에 관한 대법원 2012다94940 판결 등)의 취지와 충돌하는 지점임.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확정)은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후수익자인 생존 자녀들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 사건 특약이 유언 철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였음.}.

3.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생전에는 수증자나 제3자(상속인 포함)에게 유언의 내용(상속재산분배 내역 및 재산관련 민감정보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재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법 제40조 제1항),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신청해야 하며(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및 제23조 제7항),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따라서 위탁자 생전에 상속인들이 신탁원부 열람을 통해 사후수익자 등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유언자의 개인정보(재산관련 민감정보 포함)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4. 유언자의 생전에 비밀 유지를 통한 가족 분쟁의 예방

전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언공

증은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비롯한 ‘그 밖의 신탁조항’ 전부가 사실상 등기되어 수탁인과 상속인간, 상속인들 상호간 감정적,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常存)함.

5. 공적(公的) 보관제도의 존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유언공증’이라 함)은 공무수탁사인인 법무부 소속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사무소에서 그 공정증서 원본을 2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 계약서의 보존은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으며, 별도의 공적인 보관제도나 검인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유언대용신탁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신탁 인수 시 및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신탁법 제39조 제2항), 이와 같이 작성된 ①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간, ② 그 밖의 신탁 관련 서류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신탁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신탁법 시행령 제3조).

하지만 신탁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남은행 직원의 약 3,000억 원대 횡령사고, 2022년 우리은행 직원의 약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은행 직원의 서류 위·변조가 빈번한 점,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7년 동안(2017년~2023년 7월) 금융권 전체 횡령건수(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하고, 특히 은행권은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적 영역의 내부통제 기능에만 유언대용신탁계약서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임.

6. 저렴한 공증 비용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액(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각 신탁보수 즉, 기본보수, 기간별 보수(예: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신탁 재산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 각 부수계약에서 정하는 신탁 재산별 개별보수 및 중도해지 시 수수료, 집행 수수료 등을 지급함.

(예시) 하나은행 Living Trust(유언대용신탁) 보수(부가세별도)

※ 신탁 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계약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5%~1%
- 집행보수 : 신탁재산가액의 0.75%~1.5%
- 관리보수(연보수) 금전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연 0.3%~연 1% / 부동산 및 기타: 개별 계약에 따름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계약 수수료’는 재산가액에 따라 통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되고, 신탁계약 체결 후 부동산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되는데 드는 ‘자산관리 수수료’는 부동산의 경우 자산 가액에 따라 매년 몇 만 원에서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이 소요되고, 또 예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매년 수백만 원씩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부담

하며, 사후 ‘상속집행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져감(실제 사례 : 시가 30억 원 아파트의 경우, 모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로 계약 시 3천만 원, 매년 유지관리비 5만 원, 집행 시 0.7%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요구하였음.).

7.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의 손실 가능성이 없음

유언공증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대부분의 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원본 손실의 위험을 위탁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예시(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 제00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본 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제00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은 전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귀속함.}.

Ⅲ. 공증실무 개선방안

1. ‘유언대용신탁 공정증서’ - 신탁법 개정안 : 제59조 제3항 신설 [※ 주: 신탁법 개정안 -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계약서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거나, 분실·멸실, 위조·변조, 은닉·파기될 위험이 높음. 이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확인을 어렵게 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 달리 상속이 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에도 해가 됨. 또한 유언대용신탁이 철회가 불가능한 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익자에 의한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그 계약의 구속력과 의미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중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공증인의 개입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매년 발생하는 은행 직원의 서류 위조를 통한 빈번한 횡령사고가 개인의 범죄행위 이외에 은행 조직 전체의 내부 통제 장치의 결여로 인해 비롯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계약은 자기신탁의 설정을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

야 하는 것처럼(신탁법 제3조 제2항),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정증서유언에 준해 그 원본을 보존할 것이 필요함.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기 1. 제목의 ※주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유언의 최종 성립일 및 유언의 철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에 유언공정증서와 자필유언장 인증서 등의 전자문서 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유언공증의 적극적인 홍보

유언대용신탁에 비해 유언공증의 장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유언공증 자체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음. 게다가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고객 맞춤형 상속설계라며 유언대용신탁을 TV, 라디오,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사실과 다른 ‘과대 광고’(엄격한 법정 방식의 유언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금전의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광고 등)를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증비용보다 몇 배의 돈을 지

출하고 있는 실정임. 공증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증 주간의 홍보뿐만 아니라, 라디오, 신문, 뉴스 사이트, SNS(파워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등)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함. ☐

② 전자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2024. 4. 26.자)

☐ 법무부가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제1차년도)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과 관련되어, 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전자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화상 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2024. 4. 26.자 공문으로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4-33호(시행 2024. 4. 26.)〉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전자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가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제1차년도)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이 최근 전자공증시스템에 반영되었고,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8곳의 회원 사무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시범사업 참여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화상 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의 설명 및 교육 과정에서 체득한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불임과 같은 프로그램 개선방안들이 취합되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동 개선사항 등을 귀 부에 건의하니, 동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전자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 대한 건의사항 1부.

불임 자료

전자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 대한 건의사항

1. 개요

○ 법무부의 금년도 역점 사업 중 하나는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구축이고, 그

일환으로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인 전자 공정증서 작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전국의 8개 공증인 사무소가 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화상 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 설명 및 교육을 받았는바, 시범사업을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함.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촉탁인의 문서 작성과 관련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자 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 의하면,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채권금액, 변제방법, 이율, 촉탁인의 인적사항 등 모든 촉탁사항을 들은 후 그 전부를 하나하나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신청 단계에서 촉탁인으로 하여금 채권금액, 변제방법, 이율 등 개략적인 내용을 직접 입력하게 한 후, 공증인이 그 이후에 촉탁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렇게 하면 공정증서 내용의 오류를 줄이고, 시간

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대해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공증인법의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촉탁인들과 면담을 통해 증서를 확정된 후 공증인이 최종적으로 발급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임).

나. '어플'의 통일성과 관련

'전자 공정증서 작성 휴대폰 어플'을 종전 '인증서 휴대폰 어플'과는 다른 별도의 어플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한 동일한 1개의 어플로 통일하는 것이 공증 사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임.

다. 재도정본 및 집행문 부여와 관련

현재 개발 중인 '전자 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서는 종이출력물만을 공정증서 정본으로 인정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공정증서의 후속 사무로서 집행문 부여나 재도정본은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생김. 왜냐하면 종이출력물만 공정증서 정본으로 인정한다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받을 때 공증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화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예컨대 집행문 부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한편 요즘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도 대부분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PDF파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증서 정본 전자 PDF파일을 공정증서 정본으로 인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 제도부여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함. 왜냐하면 지금의 프로그램(안)에서는 1회에만 정본과 등본을 종이로 발급하기 때문임.

라. '전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

'화상 공정증서 작성'에 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식 규칙이라고 함)'별지에 '전자 공정증서 공증서식'을 추가하여 서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서류의 양식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증인은 서식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서식 규칙 제2조, 제3조 참조).

마. '수수료 결제방식'과 관련

현재 개발 중인 '전자 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서는, 공정증서

의 수수료에 대한 결제를 쌍방 촉탁인 중 주된 촉탁인이 단독으로 전액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수수료 결제는 주된 촉탁인과 참가촉탁인이 2분의1씩 분담하여 결제하거나 오히려 참가 촉탁인(상대방)이 전액 결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수료 결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바. 프로그램상 표기 등에 관한 수정에 관하여

- ① ‘화상공증 공정증서’의 표지 중앙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서식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면 ‘공정증서’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정증서’라고 수정하여야 함.
- ② 실무상 공정증서의 정본 출력물에는 표지 자체만으로 정본임을 알 수 있도록 공정증서 표기 바로 밑에

정 본

 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화상 공정증서 정본의 출력물에 그 표기가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즉 일반 공정증서와 화상 공정증서의 표지 외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③ 공정증서 표지 좌측 상단에 ‘등부 2024년 제000호’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등부’는 보통 ‘인증서’를 의미하므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증서’라고 기재하여야 함. 즉 ‘증서 2024년 제000호’라고 표기를 변경하여야 함.

- ④ 공정증서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버튼에 ‘인증서 발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실무상 ‘인증서’라는 표기는 사서증서 인증을 의미하므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증서’라고 기재하여야 함. 즉 ‘인증서 발행’ 버튼의 표기를 ‘증서 발행’이라고 변경하여야 함.
- ⑤ 일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서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 각자 ‘서명날인’하였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화상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촉탁인들이 전자서명을 하므로 “... 각자 ‘전자서명’하였다.”라고 표기를 변경하여야 함.
- ⑥ 일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서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같은 날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채권자에게, 등본은 채무자에게 각 1통씩 교부한 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라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안)에는 위 문구가 없음. 그런데 촉탁인에게 정본과 등본을 교부

하고 촉탁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위 서식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③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2024. 11. 25.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공증인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된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590호)에 대하여, 협회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서(공증협 제2024-91호)를 2024. 11. 2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공증업무 지침·지시·유권해석 등 회원 안내

①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회신 안내(2024. 5. 8.자)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의 산정 방법에 관한 회원 질의와 관련되어, 협회가 법무부에 2차례에 걸쳐 요청한 유권 해석 결과에 대하여 향후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산정 방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질의 내용과 함께 법무부의 유권해석, 그리고 이에 대한 협회의 재검토 요청 내용 및 법무부의 재검토 유권해석 공문의 각 내용을 2024. 5. 8.자 공문으로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4-36호(시행 2024. 5. 8.)〉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 유권해석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2023. 1. 한 회원으로부터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의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서(붙임 1 참조)를 접수하고, 이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동의서의 형식과 실질에 관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 및 ‘공증 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3. 6. 23. 법무부에 동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후 법무부는 2023. 12. 6. 법무과-9891호(2023. 12. 1.)로,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신’을 협회에 보내왔습니다. 협회는 위 회신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는 수긍하였으나, 다만 「‘부모동의서’는 목적 가액 산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중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의 ‘동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규칙 제20조 제1항의 ‘증서 수수료’는 51,500원이 아닌 25,750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 1. 4. 법무부에 위 회신

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재검토 요청의 주요 내용은 「공증실무상 ‘부모동의서’의 실질적 내용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와 모가 제3자의 주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는 보조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부와 모가 자녀를 보호해 줄 자(custodian, guardian, companion 등)를 지정 또는 선정하거나 재정보증 등을 선언하는 독자적 법률행위이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의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4. 4. 5. 법무과-2768호(2024. 3. 28.)로, 위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부모동의서’가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동의를 내용으로 한다면 ‘동의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으며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나, 실무상 ‘부모동의서’라고 통칭되지만 그 내용이 외국 현지 관리인 선임 또는 재정보증 등의 법률행위 사항을 포함한다면 동의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산정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6. 그동안 부모동의서(영문) 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질의한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회원이 통일된 기준이 아닌, 각각의 해석에 따라 산정을 함으로써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협회는 향후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산정 방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질의 내용과 함께 법무부의 유권해석 공문(2023. 12. 1. 법무과-9891), 협회의 재검토 요청 공문(2024. 1. 4. 공증협 제 2024-2호) 및 법무부의 재검토 유권해석 공문(2024. 3. 28. 법무과-2768)의 각 사본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회원사무소 질의 내용 1부.
 (2) 법무부의 유권해석 공문(2023. 12. 1. 법무과-9891) 사본 1부.
 (3) 협회의 재검토 요청 공문(2024. 1. 4. 공증협 제2024-2호) 사본 1부.
 (4) 법무부의 재검토 유권해석 공문(2024. 3. 28. 법무과-2768) 사본 1부.

붙임 자료 (1)

회원 사무소 질의 내용

<질의 1>

한 문서에 아이 1명에 대한 부모동의서

(영문) 공증 시 촉탁인으로 부, 모가 함께 공증할 시 수수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 사람 수수료(51,500원)만 계산해야 하는지? 두 사람을 계산해서 103,000원($51,500 \times 2$)으로 잡아도 가능한지요?

공증인은 각 촉탁인의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므로, 부모동의서(영문)도 각 촉탁인별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질의 2>

또한 한 문서에 아이 2명일 경우에 수수료 산정 방법?

각 아이별로 두 부모가 촉탁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51,500 \times 2 \times 2 = 206,000$ 원)?

<참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자료 (2)

법무부의 유권해석 공문
 (2023. 12. 1. 법무과-9891) 내용

제목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답변서 1부.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

- (질의①) 미성년인 자 1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 시 산정 수수료
- (질의②) 미성년인 자 2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 시 산정 수수료

[답변]

가. 질의① 관련

- 이 질의의 쟁점은 ① 촉탁인이 수인인지 여부와 ② 부모동의서를 연명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① 공증인이 부모의 촉탁으로 부모동의서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각각 확인

하여야 하므로 그 인증사무의 촉탁인은 2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② 부모는 각각 친권자이고, 이를 전제로 한 민법 제909조 제2항의 '친권의 공동행사의 원칙'은 부모간 의사합치가 필요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모가 1매의 부모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문서는 친권자 2인의 법률행위(의사표시)가 각각 기재된 연명문서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미성년인 자 1인에 대한 부모동의서(영문)의 수수료도 기존 연명문서에 대한 수수료 작성 방식에 관한 법무부 해석을 적용하여 촉탁인·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촉탁인 1인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25,750원*이며, 공증인은 부모로부터 총 51,5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동의서는 목적 가액 산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중 규칙 제14조의 '동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규칙 제20조 제1항의 '증서 수수료'는 51,500원이 아닌 25,75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② 관련

- 부모동의서는 미성년인 자 1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규정(원칙)이라면, 1매의 부모동의서에 미성년인 자 2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2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편의상 1매만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로 2개의 문서를 인증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부모의 각 미성년인 자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모동의서가 1매이더라도 각 자녀의 수만큼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인 자 2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대하여 공증인은 부모로부터 **질의 ①의 수수료 액수의 2배인 10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자료 (3)

협회의 재검토 요청 공문
(2024. 1. 4. 공증협 제2024-2호) 내용

제목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신”에 관한 재검토 요청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는 2023. 12. 1. 법무과-9891호로 우리 협회에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유권해석요청”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협회는 회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수궁합니다. 그러나 ‘질의 ① 관련’의 결론 부분 중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회는 이른바 ‘부모동의서’가 위 규칙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불임과 같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붙임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의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 요청 건의 1부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의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 요청 건의〉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동의’에 관한 증서는, 예컨대 ‘갑(甲)’의 주된 법률행위가 있고, ‘을

(乙)'이 그 '갑'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하는 보조행위(법률행위)를 할 때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그리고 '동의'는 보조행위(법률행위)이므로 그 수수료는 주된 법률행위에 관한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 중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입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 그런데 공증실무상 처리되고 있는 이른바 '부모동의서'는 그 실질이 '갑'의 주된 법률행위에 대한 보조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을(父)'과 '병(母)'의 독립적·주된 법률행위입니다. 그 예로, 캐나다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유학 보낼 때 공증을 하는 아래의 '부모동의서'와 '그 번역문'(예시 1, 2)의 내용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예시 1, 2의 부모동의서를 보면, 제목이나 명칭도 동의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외국 현지 관리인(custodian)이나 보호자(guardian)를 선정한다는 취지의 주된 법률행위에 대한 선언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만 하는 보조적 법률행위가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상 '부모동의서'

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이해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 공증실무상 '부모동의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 사례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필리핀 유학시 공증하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와 그 번역문(예시 3, 4), 그리고 괌이나 사이판으로의 미성년자 여행시 공증하는 '선언서(AFFIDAVIT : TRAVEL COMPANION FOR MINOR CHILD)'와 그 번역문(예시 5, 6)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도 앞의 부모동의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주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만 하는 보조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와 모가 독자적으로 재정 보증, 보호자 선임 등을 선언하는 독립적·주된 법률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실무상 '부모동의서'의 실질적 내용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와 모가 제3자의 주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는 보조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부와 모가 자녀를 보호해 줄 자(custodian, guardian, companion 등)를 지정 또는 선정하거나 재정보증 등을 선언하는 독자적 법률행위이기 때문

에 공증 제도가 시행되어 온 이래 오늘
에 이르기까지 공증인이 ‘부모동의서’
에 대한 공증을 할 때 공증인 수수료 규
칙 제14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는 하나
도 없었던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회는 상임이
사회 등을 통해 위 회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와 같은 결론에 도
달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 중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14조 제1호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건 ‘부모동의서’가 위 규칙 제14조 제
1호에서 규정하는 ‘동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신속히 재검토하
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예시 1)부터 (예시 6) 서식 각 1부.

(예시 1)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PROTECTED WHEN COMPLETED - B	
PAGE 2 OF 2					
CUSTODIANSHIP DECLARATION - PARENTS/GUARDIANS FOR MINORS STUDYING IN CANADA					
STUDENT INFORMATION					
Family name	Given name(s)	Citizenship	Date of birth Y M D	Sex ☐ Male ☐ Female	
Name and address of school in Canada					
Address where student will reside in Canada					
PARENTS/GUARDIANS INFORMATION (Preferably from both parents/guardians)					
Parent/Guardian 1		Parent/Guardian 2			
Full name	Family name	Given name(s)	Family 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Y	M	D	Y	M D
Home address					
Telephone number					
CUSTODIAN INFORMATION					
Family name	Given name(s)	Status in Canada ☐ Canadian citizen or ☐ Permanent resident	Date of birth Y M D	Telephone no.	
Current residential address					
My/Our child will reside: ☐ with the appointed custodian, ☐ in the school dormitory, or ☐ with another person: _____ (please provide name and indicate relationship).					
I/We, _____ and _____ (names of parents/guardians), the parents/guardians of the said student, _____ (name of student), hereby grant full custodianship to _____ (name of custodian), during the student's stay in Canada, while he/she is under the age of majority in the province in which he/she resides. I have made the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care and support of the said student such that the custodian should act in the place of me/us, the parents. By signing this custodian agreement, I/We affirm that I am/we are satisfied the above appointed custodian resides within a reasonable distance of my/our child's intended residence and school and will be able to fulfil his/her obligations as a custodia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ignature of parent/guardian (1)		Signature of parent/guardian (2)		Date	
Sworn before me at: _____ (city), in the province of _____ (province) _____ (country or territory (if applicable))		This _____ day of _____ (month) _____ (year).			
Signature of notary		OFFICIAL SEAL OF NOTARY PUBLIC			
IMM 5646 (08-2016) E (AUSSI DISPONIBLE EN FRANÇAIS - IMM 5646 F) ALSO AVAILABLE ON CIC WEB SITE AT: http://www.cic.gc.ca					

(예시 2)

관리인 임무 선언 -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미성년자를 위한 부모/보호자

학생 정보

성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캐나다 내 학교명		주소		
학생이 캐나다에서 거주할 주소 N/A				

부모/보호자 정보(가급적 양쪽 부모/보호자 모두 작성)

	부모/보호자 1		부모/보호자 2	
전체 이름	성	이름	성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관리인 정보

성	이름	캐나다 내 지위 ☐ 캐나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생년월일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나/우리 아이는 거주할 예정이다.

☐ 지명된 관리인과 함께 ☐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 _____

↳ (이름을 제시하고 관계를 나타내시오)

나/우리, _____ (부모/보호자 1), 그리고 _____ (부모/보호자 2), 언급된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_____ (학생의 이름)은(는) 이로써 모든 관리인 임무를 _____ 에게 인정하고 학생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나는 관리인이 부모 대신에 행동하는 등의 언급된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이 관리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나/우리 는 위에 지명된 관리인이 나/우리 아이의 거주지와 학교에서 적당한 거리 안에서 거주하고 비상시에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단언합니다.

부모/보호자의 서명(1) _____ 년 / 월 / 일 (날짜) 부모/보호자의 서명(2) _____ 년 / 월 / 일 (날짜)

내 앞에서 맹세함 : _____ (시) _____ (도/광역시) _____ (국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공증인의 서명

_____ 공증인의 공적 직인

(예시 3)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I/We, _____ and _____

Father (아버지 이름)

Mother(어머니 이름)

Of legal age, Korean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That I/We am/are the parent(s) of _____

Name of minor(자녀 이름)

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Philippines with Mr./ Ms. _____

Name of guidance(인솔자 이름)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free will and with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That I/We guarantee that he /she will not be a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 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_____
in Korea. *Date(날짜)*

Signature of Father(아버지 서명)

Signature of Mother(어머니 서명)

(예시 4)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본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법적인 성인인 _____ 와(과) _____ 로서 합법적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것을 맹세합니다.

1. 본인들은 _____ 의 부모입니다.
2. 본인들은 본인들의 자녀가 _____ 와 함께 필리핀 여행에 동행할 것을 서면상으로 동의합니다.
3. 본인들은 위 언급한 소아의 부모로서 어떠한 간섭을 받은 바 없이 본인들이 자의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들은 위에 언급한 본인들의 자녀가 여행에 소요되는 숙박비, 용돈 등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5. 본인들은 본인들의 자녀가 필리핀 정부측에 어떠한 부담도 지우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6. 본인들은 어떠한 법률이나 제출목적도 감수하겠다는 뜻이 진실임을 증명하고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그 증거로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에 한국에서 서명합니다.

 아버지 서명

 어머니 서명

(예시 5)

AFFIDAVIT:TRAVEL COMPANION FOR MINOR CHILD

TRAVELER INFORMATION (MINOR CHILD)

NAME: _____ SEX: _____
 BIRTHDATE: _____ PASSPORT NO: _____
 DATE OF ENTRY TO CNMI: _____
 REASON FOR ENTRY INTO THE CNMI: _____
 LOCAL TRAVEL AGENT (OR CONTACT PERSON IN CNMI):
 ADDRESS: _____
 HOTEL (OR ACCOMMODATION IN CNMI):
 ADDRESS: _____

CONSENT FROM PARENTS OR GUARDIAN

1. MY DAUGHTER / SON INTENDS TO STAY IN THE CNMI FOR _____ DAYS;
2. MY DAUGHTER / SON IS TRAVELING TO THE CNMI WITH _____;
3. I, _____ AS THE PARENT DO HEREBY ATTEST TO AND
 INFORM YOU THAT MY DAUGHTER'S / SON'S GUARDIAN FOR THIS TRAVEL IS
 AS FOLLOWS:

(PARENTAL GUARDIAN): _____

-RELATIONSHIP: _____
 -ADDRESS: _____
 -CONTACT PHONE NUMBER: _____ PASSPORT NO: _____

SIGNATURE OF AFFIANT(PARENT) _____

PARENT'S IDENTIFICATION

-ADDRESS: _____
 -CONTACT PHONE NUMBER: _____
 -EMAIL: _____

Date : _____

Father _____ (signature) Mother _____ (signature)

붙임 자료 (4)

법무부의 재검토 유권해석 공문 (2024. 3. 28. 법무과-2768) 내용

제목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유권해석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답변서 1부.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추가검토〉

[질의]

- ‘부모동의서’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 ‘동의에 관한’ 증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

[답변]

- ‘부모동의서’가 부모의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동의를 내용으로 한다면, 그 문서는 ‘동의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으며,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의 적용대상입니다.
 - 부모가 미성년자의 여행에 동의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것

으로서 이를 부모만의 개별·독립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공증인은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부과 시 증서의 표제에 구애받지 않으며, **증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부모동의서’라고 통칭되나 그 내용이 외국 현지 관리인(custodian) 선임 또는 재정보증 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면, **위 증서를 동의에 관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의서에 첨부된 통칭 ‘부모동의서’의 양식이 각기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동의서’의 표제, 양식, 내용 등이 하나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 유권해석 회원 안내’에 대한 해설 (2024. 6. 19.자)

○ 상기 ①의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의 산정 방법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에 대한 해설을 2024. 6. 19.자 공문으로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4-50호(시행 2024. 6. 19.)>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에 대한 해설

1. 협회의 2024. 5. 8.자 공증협 제2024-36호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 관련입니다.
2. 협회의 위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에 대하여 일부 회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첨부서류와 같이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에 대한 해설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에 대한 해설 1부

붙임 자료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에 대한 해설

1. 개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 1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은 2인으로 연명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촉탁인·작성명의인 수대로 공증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25,750원(목적가액 산정 불능)×2(외국어)×2(촉탁인수)}.

② 미성년인 자 2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각 미성년인 자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모동의서가 1매이더라도 각 자녀의 수만큼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촉탁인·작성명의인 수와 각 자녀의 수대로 공증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25,750원(목적가액 산정 불능)
×2(외국어)×2(촉탁인 수)×2(자녀
의 수)}.

- ③ 다만 ‘동의’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를 받아야 하는데, 그 증서가 ‘동의’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興否)는 ‘동의서’라는 증서의 표제에 구애받지 않고, 증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④ 따라서 실무상 ‘부모동의서’라고 통칭되나 그 내용에 ‘부모 동의’ 외에 ‘외국 현지 관리인(custodian) 선임 또는 재정보증 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증서는 위 규칙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즉 ‘부모동의서’라는 각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부모 동의’에 관한 증서와 같이 순수하게 오로지 ‘부모 동의’인 경우에는 공

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서 현재 공증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부모동의서’의 구체적인 사례별로 수수료를 설명하면,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

(예시 1 : 부모 동의 공증)

NOTARIZED PARENTAL CONSENT	
STUDENT 1	
NAME IN FULL	
DATE OF BIRTH	
PRESENT ADDRESS	
FATHER	
NAME IN FULL	
DATE OF BIRTH	
PRESENT ADDRESS	
PHONE NUMBER	
MOTHER	
NAME IN FULL	
DATE OF BIRTH	
PRESENT ADDRESS	
PHONE NUMBER	
I, _____ the father of the said student, _____ agree her study accompanying her mother, _____ in Canada while under the age of 19 years.	
_____ Date	_____ Signature of father
Attachment: Official Notarial certificate of this Parental Consent signed and sealed by a Notary Public in Korea	

(예시 2 : 부모 동의 양식)

PARENTAL CONSENT FORM	
We, _____ and _____, are the lawful custodial parents or legal guardians of _____ curr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e acknowledge that our child is traveling internationally and has our consent and permission to travel to Pakistan.	
<u>Parent Information</u>	
Father's Full Name:	Mother's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Passport Number:
Telephone Number:	Telephone Number:
E-mail:	E-mail:
Address:	Address:
Hwaseo-myeon, Sangju-si,	Hwaseo-myeon, Sangju-si,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Signature of Father	Date
_____	_____
Signature of Mother	Date
_____	_____

(예시 3 : 미성년자 여권 발급 동의서)



U.S.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OF CONSENT:
ISSUANCE OF A U.S. PASSPORT TO A CHILD

Please Print Legibly Using Black Ink Only. If you make an error, complete a new form. Do not correct.

OMB CONTROL NO. 1405-0129
EXPIRES: 06-30-2024
Estimated Burden: 20 minutes

RESET

1. CHILD'S NAME (As it appears on form DS-11, Application for a U.S. Passport)				
Last	First	Middle		
2. CHILD'S DATE OF BIRTH (mm/dd/yyyy)		3. THIS CONSENT IS VALID FOR A: ☐ Passport Book and Card ☐ Book Only ☐ Card Only		
4a. IS CHILD UNDER 16 YEARS OLD? ☐ Yes ☐ No		4b. IF YES, PRINT NAME OF ADULT APPLYING WITH CHILD		
5. STATEMENT OF CONSENT To be completed by the legal parent/legal guardian who cannot apply with the child. The legal parent/legal guardian who cannot apply with the child must complete the information below. This statement expires 90 days after the date of notarization.				
I, _____, give my consent to the issuance of a United States passport to the minor child Print Name of Legal Parent/Legal Guardian (who cannot apply in person with the child) named on this application. My consent is unconditional with regards to passport validity and travel.				
Street Address		Apt#	City	State
()		Area Code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STOP! YOU MUST SIGN AND DATE BELOW IN FRONT OF A NOTARY.				
OATH: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all statements made in this supporting document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of Legal Parental/Legal Guardian (who cannot apply in person with the child)			Date (mm/dd/yyyy)	
IMPORTANT: You must submit a clear photocopy of the front and back of the identification you presented to the notary. The date you sign the form must be the same date that the notary signs the form.				
6. FOR COMPLETION BY NOTARY				
On the date specified above and below, the affiant listed above, who is not related to me,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and is known to me to be the person whose name is subscribed to and acknowledged that he/she executed the same for the uses and purposes therein contained. I have properly verified the identity of the affiant by personally viewing the below notated identification document and matching photocopy.				
Name of Notary	Print Name (Notary Public)			
Location	City, State			
Commission Expires	Date (mm/dd/yyyy)			
Identification Presented by Legal Parent/Legal Guardian: (who cannot apply in person with the child)		☐ Driver's License ☐ Passport ☐ Military ID ☐ Other (specify)		
Legal Parent/Legal Guardian ID Number:	Place of Issue:			
Issue Date (mm/dd/yyyy):	Expiration Date (mm/dd/yyyy):			
Signature of Notary	Date of Notarization:			

DS-3053 12-2020

Page 2 of 2

※ 예시 1, 2, 3과 같이 증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순수하게 ‘부모 동의’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를 적용하여,

① 미성년인 자 1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51,500원 {=25,750원(목적가액 산정 불능)×2(외국어)×2(촉탁인 수)×(동의증

서)} (사본 제작 보존료 별도)의 공증 수수료를 받으면 되고,

② 미성년인 자 2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 시에는 103,000원 {=25,750원(목적가액 산정 불능)×2(외국어)×2(촉탁인 수)×2(자녀의 수)×(동의증서)} (사본 제작 보존료 별도)의 공증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시 4 : 캐나다의 이른바 ‘부모동의서’인 관리인 선언)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PROTECTED WHEN COMPLETED - B	
PAGE 2 OF 2					
CUSTODIANSHIP DECLARATION - PARENTS/GUARDIANS FOR MINORS STUDYING IN CANADA					
STUDENT INFORMATION					
Family name	Given name(s)	Citizenship	Date of birth	Sex	
			Y M D	☐ Male ☐ Female	
Name and address of school in Canada					
Address where student will reside in Canada					
PARENTS/GUARDIANS INFORMATION (Preferably from both parents/guardians)					
Parent/Guardian 1		Parent/Guardian 2			
Full name	Family name	Given name(s)	Family name	Given name(s)	
	Y M D		Y M D		
Date of birth					
Home address					
Telephone number					
CUSTODIAN INFORMATION					
Family name	Given name(s)	Status in Canada	Date of birth		
		☐ Canadian citizen or ☐ Permanent resident	Y M D		
Current residential address		Telephone no.			
My/Our child will reside: ☐ with the appointed custodian, ☐ in the school dormitory, or ☐ with another person: _____ (please provide name and indicate relationship).					
I/We, _____ and _____ (names of parents/guardians), the parents/guardians of the said student, _____ (name of student), hereby grant full custodianship to _____ (name of custodian), during the student's stay in Canada, while he/she is under the age of majority in the province in which he/she resides. I have made the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care and support of the said student such that the custodian should act in the place of me/us, the parents. By signing this custodian agreement, I/We affirm that I am/we are satisfied the above appointed custodian resides within a reasonable distance of my/our child's intended residence and school and will be able to fulfil his/her obligations as a custodia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ignature of parent/guardian (1)		Signature of parent/guardian (2)			
Date		Date			
Sworn before me at: _____ (city), in the province of _____ (province)		country or territory (if applicable)			
This _____ day of _____ (month) _____ (year).					
Signature of notary		OFFICIAL SEAL OF NOTARY PUBLIC			
(AUSSI DISPONIBLE EN FRANÇAIS - IMM 5646 F) ALSO AVAILABLE ON CIC WEB SITE AT: http://www.cic.gc.ca					

(예시 5 :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의 서식)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I/We, _____ and _____
Father (아버지 이름) Mother (어머니 이름)

Of legal age, Korean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That I/We am/are the parent(s) of _____
Name of minor (자녀 이름)

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Philippines with Mr./ Ms. _____
Name of guidance (인솔자 이름)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free will and with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That I/We guarantee that he /she will not be a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 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_____
 in Korea. *Date (날짜)*

Signature of Father (아버지 서명)

Signature of Mother (어머니 서명)

(예시 6 : 미성년아동을 위한 여행 동반자 서식)

AFFIDAVIT:TRAVEL COMPANION FOR MINOR CHILD

TRAVELER INFORMATION (MINOR CHILD)

NAME: _____ SEX: _____
 BIRTHDATE: _____ PASSPORT NO: _____
 DATE OF ENTRY TO CNMI: _____
 REASON FOR ENTRY INTO THE CNMI: _____
 LOCAL TRAVEL AGENT (OR CONTACT PERSON IN CNMI):
 ADDRESS: _____
 HOTEL (OR ACCOMMODATION IN CNMI):
 ADDRESS: _____

CONSENT FROM PARENTS OR GUARDIAN

1. MY DAUGHTER / SON INTENDS TO STAY IN THE CNMI FOR _____ DAYS:
2. MY DAUGHTER / SON IS TRAVELING TO THE CNMI WITH _____;
3. I, _____ AS THE PARENT DO HEREBY ATTEST TO AND
 INFORM YOU THAT MY DAUGHTER'S / SON'S GUARDIAN FOR THIS TRAVEL IS
 AS FOLLOWS:

(PARENTAL GUARDIAN): _____

-RELATIONSHIP: _____
 -ADDRESS: _____
 -CONTACT PHONE NUMBER: _____ PASSPORT NO: _____

SIGNATURE OF AFFIANT(PARENT) _____

PARENT'S IDENTIFICATION

-ADDRESS: _____
 -CONTACT PHONE NUMBER: _____
 -EMAIL: _____

Date : _____

Father _____ (signature) Mother _____ (signature)

※ 이른바 ‘부모동의서’라는 표현으로 공증실무상 자주 사용되고 있는 위 예시 4, 5, 6과 같이 그 서면에 ‘외국 현지 관리인(custodian 또는 guardian) 선임 또는 재정보증 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미성년인 자 1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 103,000원 {=25,750원(목적가액 산정 불능)×2(외국어)×2(촉탁인 수)} (사본 제작 보존료 별도)의 공증 수수료를 받으면 되고,
미성년인 자 2인에 대한 1매의 부모동의서(영문)에 관하여 부모가 함께 촉탁시에는 206,000원 {=25,750원(목적가액 산정 불능)×2(외국어)×2(촉탁인 수)×2(자녀의 수)} (사본 제작 보존료 별도)의 공증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

③ 번역문 인증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회원 회람(2024. 10. 10.자)

○ 협회는 2024. 8. 30. 임명공증인 ○○○ 회원으로부터 “원문 계약서에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협회 회신 내용을, 회원 사무소에도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는 2024년도 제9차 상임이사회 의결(2024. 9. 25.)에 따라, 동 질의와 회신 내용을 각 회원 사무소에 2024. 10. 10.자(공증협 제2024-78호) 공문으로 회람하는 한편, 대한공증인협회 ‘밴드’ 및 ‘카페’에 게재된 동 질의와 유사한 ‘공증실무 Q&A’ 100번 및 300번의 답변은 동 질의에 대한 결론과 배치되어 폐기하기로 결정함.

○ 동 내용에 대하여는 “공증업무 질의·회신” 중 ㉞번역문 인증 관련 질의 회신(2024. 10. 8.자)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

④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회원 안내(2024. 10. 11.자)

○ 협회 회원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 9. 30.부터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대리권 증명 증서로 제출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가 “정부 24 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공증인은 당해 인감

증명서의 발급용도가 ‘공증·보증’이고, 구체적인 제출처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질의 회원에게 회신하였음을 협회에 알려진 데 대하여, 협회는 동 유권해석을 대리권 증명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2024. 10. 11.자 공문으로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4-79호(시행 2024. 10. 11.)〉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협회 회원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 9. 30.부터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대리권 증명 증서로 제출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정부 24 발급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가 제출

된 경우, 공증인은 당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가 ‘공증·보증’**이고, **구체적인 제출처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질의 회원에게 회신하였다고 협회에 알려왔습니다.

4. 이에 협회는 법무부 유권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각 회원 사무소에 안내하여 드리니 대리권 증명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1부

붙임 자료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질의]

- 정부24 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사용 가능 여부

[답변]

- 공증인법 및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은 정부24 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리촉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 증서(이하 ‘위임장 등’)와 함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2항).
- 인감을 신고한 자 본인(미성년자 등 제외)만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 ① 송무,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②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당해 용도로는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 따라서 대리권의 증명 등과 관련하여 정부24 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공증인은 당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가 ‘공증·보증’이고 구체적인 제출처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정증서상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의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

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위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증인은 재산권 변동과 관련성이 높은 공증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제반 서류의 진위 및 대리권의 증명 여부 확인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제출된 위임장 등 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공증인은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㉔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추가 유권해석 회원 안내 (2024. 12. 6.자)

- 상기 ㉔와 관련되어, 인터넷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안내문 4항 중 “(…전략…), 본인이 최종적으로 발급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후 제출처에 제출해야 하며, (…후략…)”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상기 안내문의 내용이 쉽게 인식되지 않고, 법무부 유권해석에서도 본인의 서명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본인의 서명에 대한 주의가 결핍된다는 점에서 ① 본인의 서명이 생략되어도 무방한지, 혹은 ② 반드시 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회원 질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법무부에 요청하여 시달받은 유권해석 결과를 2024. 12. 6.자 공문으로 각 회원사무소에 추가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4-97호(시행 2024. 12. 6.)〉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추가 유권해석 안내

1.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2024-79호 (시행 2024. 10. 11.)와 관련입니다.
2. 협회는 최근 회원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안내문 4항 중 “(…전략…)”, 본인이 최종적으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후 제출처에 제출해야 하며,

(…후략…)”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상기 안내문의 내용이 쉽게 인식되지 않고, 법무부 유권해석에서도 본인의 서명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본인의 서명에 대한 주의가 결핍된다는 점에서 ① 본인의 서명이 생략되어도 무방한지, 혹은 ② 반드시 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3. 협회는 위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 질의를 법무부에 이첩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4. 11. 21.자 법무과-9207호 공문을 통해 “정부24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는 점, (발급용도·제출처·발급신청자의 서명 확인란) 기재사항은 발급 시 본인에 의하여 직접 기재되어 출력되는 점, 발급신청자 본인의 서명은 발급용도 및 제출처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의미로 출력본에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되지 않을 것이나, 대리인이 위 기재사항에 관한 발급신청자 본인 서명의

흡결을 스스로 보충하는 행위는 취지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시달하였습니다.

5. 이에 협회는 위 법무부의 유권해석 원문을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하여 드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무부 질의 회신 공문(법무과-9207, 시행 2024. 11. 21.) 사본 1부.

붙임 자료

법무부 질의 회신 공문
(법무과-9207, 시행 2024. 11. 21.) 내용

제목 : 질의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답변서 1부.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질의>

[질의]

-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

서를 제출받을 시 지침

[답변]

- 공증인법 및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은 **정부24 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리촉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 증서(이하 ‘위임장 등’)와 함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2항).
- 인감을 신고한 자 본인(미성년자 등 제외)만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 ① 송무,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②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당해 용도로는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 따라서 대리권의 증명 등과 관련하여 정부24 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

명서가 제출된 경우, 공증인은 당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가 ‘공증·보증’이고 구체적인 제출처가 기재되었는지, 또한 하단의 기재사항 확인란에 발급신청자 본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때 발급용도에 ‘공증’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처에는 당해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을 공증사무소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정부24 발급(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는 점, 위 기재사항은 발급 시 본인에 의하여 직접 기재되어 출력되는 점, 발급신청자 본인의 서명은 발급용도 및 제출처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의미로 출력본에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되지 않을 것이나, 대리인이 위 기재사항에 관한 발급신청자 본인 서명의 흠결을 스스로 보충하는 행위는 취지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공정증서상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의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위 인감증명법 시행

령의 예외 규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증인은 재산권 변동과 관련성이 높은 공증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제반 서류의 진위 및 대리권의 증명 여부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제출된 위임장 등 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공증인은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증업무 질의·회신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관련 질의 회신 (2024. 1. 19.자)

□ 질의 내용

1. 사실관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A주식회사(대표이사 홍길동)가 B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증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공증 촉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 발행일 및 위임일 당시에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홍길동 단독대표이사였으나, 공정증서 작성일 현재에는 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홍길동과 김갑술로 2인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종전의 공증위임장 작성 시에는 단독대

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 현재에는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공동대표이사 명의로 다시 공증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다시 제출하여야 공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6호(시행 2024. 1. 19.)〉

1. 질의 요지

귀 공증인의 2023. 12. 27.자(귀 사무소의 시행일자 2023. 12. 21.) ‘어음공정증서 질의 사항’ 제목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① 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갑(甲)이었으나,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당시에는 공동대표이사 갑, 공동대표이사 을(乙)로 변경된 경우에, 약속어음 발행인 란의 법인 대표이사와 종전 위임장 기재의 법인 대표이사가 갑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의 촉탁으로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의 법인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명의로 다시 공증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인 인

감증명서도 다시 제출하여야 공증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전의 대표이사 촉탁으로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한 여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으로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새로이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촉탁 당시 법인 대표이사가 촉탁하여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약속어음 발행 당시의 법인 대표이사가 퇴임한 후에도 대표이사 재임 당시의 일자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인 대표이사가 퇴임 직전에 법인 대표이사로서 인감증명서를 떼어둔 것과 퇴임 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재임 시 날짜로 작성한 어음을 가지고 임의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법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변경 후의 대표이사 촉탁으로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한 여부

법인의 변경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어음에 대하여 변경 후 대표이사가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의 적법한 법인 대표

자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적법한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불측의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될 일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일응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증실무상 종전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람이 다르다며 현재의 대표이사가 인증을 촉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수임을 연장해 볼 때 (어음 공정증서의 내용에도 “위 촉탁인 ○○○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을 발행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며”라는 내용이 있음), 변경 전 대표이사 작성 명의의 어음에 대하여 변경 후의 대표이사가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종전 대표이사 발행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A주식회사(대표이사 홍길동)가 B를 수

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증 위임장의 위임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공증 촉탁을 하였는데, 약속어음 발행일 및 위임일 당시에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홍길동 단독 대표이사였으나, 공정증서 작성일 현재에는 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홍길동과 김갑술 2인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

① 종전의 공증위임장 작성 시에는 단독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더라도 촉탁 당시의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 현재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공동대표이사 명의로 다시 공증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다시 제출하여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하는 것도 약속어음을 작성한 대표자와 공증 촉탁을 하는 대표자가 달라져 어음을 발행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어음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적절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의 대표이사가 종전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이 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종전 대표이사 발행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

② 집행증서 작성 관련 질의 회신(2024. 1. 19.자)

□ 질의 내용

1. 준소비대차 공증 가능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채권이 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30일까지 물품(식자재)을 공급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2023년 9월 1일자로 작성한 경우 계약체결일(물품공급 전)인 2023년 9월 1일에 아래와 같은 채무변제계약 공증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증이 가능한가요?

제1조(목적) 채무자와 채권자 간 2023년 9월 1일자 작성 물품공급계약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

제하여야 할 물품(식자재)대금이 3천만 원임을 승인하고 ……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일) 2023년 10월 30일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없다.

제4조(지연손해금)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

2. 위약벌 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2023년 9월 1일자로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별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본 위약벌에 관한 사항은 변제기한을 2023년 12월 30일로 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는 위약벌 지급에 대한 위약벌지급약정 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위약벌에 대한 집행증서 작성 시, 계약체결과 동시(2023년 9월 1일)에 아직 위약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위약벌지급약정 공정증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요?

제1조(목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금(채무자와 채권자 간 2023년 9월 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위약벌)이 금 일억 원임을 승인하고 ……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23년 12월 30일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없다.

제4조(지연손해금)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

3. 법인이 채권채무의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공증 가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조의 계약은 약속어음으로 공증하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률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협회 차원에서의 담보조의 약속어음 공증에 관하여 전자어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기존 채권자(양도인)가 집행문 3통을 이미 발급(다른 날짜에 각 1통씩)받은 상태에서 승계를 위한 양도양수계약 및 통지 등 양도절차를 마친 경우를 전제

로 한 질의입니다.

- (1) 양도인이 2통을 사용(법원에 보관) 하였고 승계와 동시에 승계인에게 공정증서 1통만 교부하여 준 경우 나머지 2통에 대한 사용증명원 또는 결정문을 반드시 가져와야 양수인이 교부받은 1통에 대한 승계집행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2) 승계집행문 아닌 일반적인 채도부여는 다른 날짜에 이미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던 경우라도 바로 직전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대한 사용증명원 1통만 요청하고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 (3) 양도인이 3통을 다 사용한 후 승계인에게 양도했을 때 승계인이 사용증명원 또는 결정문 3통을 가져와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채도부여와 동시에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인도집행 공정증서의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관련

최근 인도집행문 발급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문 발급 후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기관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 하여 공탁한 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물 인도집행 공정증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 “임대인은 2023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 * *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연체금 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동시이행 조항인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라는 조항을 넣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집행기관은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는 보정명령 없이 (보증금 공탁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7호(시행 2024. 1. 19.)〉

I. 서언

2024. 1. 3.자 접수 ‘집행증서 작성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제목의 질의서에서 귀 인가공증인은 1. 준소비대차 공증 가능 여부, 2. 위약별 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 3. 법인 채권채무의 담보 목적 약속어음 공

증 가능 여부, 4. 승계집행문부여 가부 및 5. 인도집행공정증서의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질의를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의 내용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II. 질의 내용과 답변

1.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가능 여부

가. 질의 내용

2023년 10월 30일까지 물품(식자재)을 공급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2023년 9월 1일자로 작성한 경우 계약체결일(물품공급전)인 2023년 9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한가요?

제1조(목적) 채무자와 채권자간 2023년 9월 1일자 작성 물품공급계약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물품(식자재)대금이 3천만 원임을 승인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일) 2023년 10월 30일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없다.

제4조(지연손해금)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

나.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위 질의 사안은 금액이 확정된 채권이므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채무자는 ○○○○년 ○○월 ○○일 채권자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자 작성 첨부 물품공급계약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물품(식자재)대금이 금 3천만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23년 10

월 30일까지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없다.
 제4조(변제장소) 변제장소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위약별 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가능 여부

가. 질의 내용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2023년 9월 1일자로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매도인이 위약시 위약별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본 위약별에 관한 사항은 변제기한을 2023년 12월 30일로 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는 위약별 지급에 대한 위약별지급약정 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위약별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 시, 계약 체결과 동시(2023년 9월 1일)에 아직 위약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위약별 지급 공정증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요?

제1조(목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금(채무자와 채권자간 2023년 9월 1일자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위약별)이 금 일억 원임을 승인하고---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23년 12월 30일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없다.

제4조(지연손해금)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

나. 답변

위약별에 관하여는 아직 채권의 발생 유무가 불확정한 상황이므로 그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굳이 그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다면, 공증인으로는 조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채권자가 공증인에게 조건성취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을 명확히 설명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성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채무자는 ○○○○년 ○

○월 ○○일 채권자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자 작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약벌에 의한 금원이 금 일억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제1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한 채무자의 위약이 발생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2023년 10월 30일까지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없다.

제4조(변제장소) 변제장소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법인이 채권채무의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공정증서의 작성 가능성 여부

가. 질의 내용

법인이 채권채무의 담보로써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공증이 가능한지요?
-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조의 계약은 약속어음으로 공증하

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전자어음에 관한 법률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담보조의 약속어음 공증에 관하여 전자어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답변

법인이 채권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처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면 좋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여서 종이 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난감할 때가 많은 문제를 본 협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는 2019. 11. 말경에 법무부장관에게 위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 제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협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문의

가. 질의 내용

기존 채권자(양도인)가 집행문 3통을 이미 발급(다른 날짜에 각 1통씩) 받은 상태에서 승계를 위한 양도양수 계약 및 통지 등 양도절차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하여,

- (1) 양도인이 2통을 사용(법원에 보관)하였고 승계와 동시에 승계인에게 공정증서의 정본과 집행문 1통만 교부하여 준 경우 나머지 2통에 대한 사용증명원 또는 결정문을 반드시 가져와야 양수인이 교부받은 1통에 대한 승계집행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2) 승계집행문 아닌 일반적인 채도부여는 다른 날짜에 이미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던 경우라도 바로 직전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대한 사용증명원 1통만 요청하고 있는데 적합한지 여부.
- (3) 양도인이 3통을 다 사용한 후 승

계인에게 양도했을 때 승계인이 사용증명원 또는 결정문 3통을 가져와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채도부여와 동시에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 (1)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있어서는 승계사실을 심사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며, 종전에 부여한 집행문의 사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공증실무 Q&A 1395번 참조). 다만 전부명령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사용증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증실무 Q&A 1393번 참조).
- (2) 집행문이 채도부여 또는 수통부여를 통하여 여러 통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집행문에 대한 사용증명을 모두 가지고 와야 추가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바로 직전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대한 사용증명원 1통만을 받고 추가 집행문을 채도부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3) 위 (1) 답변과 같은 이유에서 양

도인이 3통을 다 사용한 후 승계인에게 양도했을 때 승계인이 사용증명원 또는 결정문 3통을 가져와야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채도부여와 동시에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인도집행 공정증서의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하여

가. 질의 내용

최근 인도집행문 발급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발급 받은 후, 채권자가 집행기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기관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고 하여 공탁한 후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물인도집행 공정증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 “임대인은 2023년 〇〇월 〇〇일까지 임대보증금 〇〇〇〇〇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연체금 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동시이행 조항인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집행기관은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는 보정명령 없이(보증금 공탁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항변권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공정증서에 동시이행 조항인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그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명도할 때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고, 명도시까지 청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전원합의체) 참조}. 따라서 동시이행 조항인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집행기관은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하

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물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하나의 항변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장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맞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이하게 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우선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임대인)가 집행기관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집행기관은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는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입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참조)). ☐

③ 약속어음 시효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 손해금 관련 질의 회신(2024. 4. 25.자)

□ 질의 내용

1. 일람출급 약속어음 지급제시기간 연장 시효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 제2호(만기), 동법 제34조 제1항에 기하여 일람출급 약속어음 지급제

시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일 발행일을 2024년 3월 11일,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단, 지급 제시기간을 6년 연장한다고 한 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이 2030년 3월 10일에 지급 제시할 시 시효는 그 지급제시일인 2030년 3월 10일부터 3년인지요?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식상 “지연 손해금”의 의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상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의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란 의미에 대하여 다른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지났어도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할 시

1) 채권압류 신청 시에 “원금+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까지의 이자+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압류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으로만 계산하는지,

2) 아니면, “위 합산액+미지급 이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압류 신청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이자제한법 이내에서 또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이자제한법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압류 대행을 많이 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미지급 이자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발생시켜 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나는 경우도 있고 보정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법원에서조차 위 문구 때문에 혼동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 3) 위 1)의 계산이 맞다면 촉탁인이 “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물론이고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시 그 미지급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을 원할 시에는 2)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해도 되는지요?
- 4)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식의 지연손해금 문구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지연손해금 문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 5) 공증 촉탁인들도 위 지연손해금의 “월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란 문구

때문에 많은 문의를 하므로 위 1), 2)의 계산 방법 중 1)번이 맞다고 할 경우 서식 자체를 변경하면 혼동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31호(시행 2024. 4. 25.)〉

I. 질의 1. 일람출급 약속어음 지급제시기간 연장 시 시효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 제2호(만기), 동법 제34조 제1항에 기하여 일람출급 약속어음 지급제시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일 발행일을 2024년 3월 11일,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단, 지급제시기간을 6년 연장한다 라고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이 2030년 3월 10일에 지급제시할 시 시효는 그 지급제시일인 2030년 3월 10일부터 3년인지요?

〈답변〉

가. 어음법 규정

-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

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어음법 제34조 제1항).

-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어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8호 시효(제70조와 제71조)}.

질의 사례와 같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만기를 일람출급으로 하되 지급제시기간을 6년 연장한다고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음.

※ 공증실무 Q&A 115번에서도, 일람출급어음 지급제시기간 연장 가부에 대하여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어음에 관한 제34조 제1항이 약속어음에 준용되므로 발행인은 지급제시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기재하면서 ‘다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제시할 수 있음.’과 같이 추가 기재할 수

있음.”이라는 답변이 나간 바 있음.

나. 사안에 대한 검토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만기(지급기일)로부터 3년임(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은 지급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는 어음으로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함(어음법 제34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2호). 일람출급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의 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 만기 도래일은 위 제시기간의 말일임. 그러므로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은 발행일로부터 최장 4년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2020. 4. 29.자 질의에 대한 협회 공증실무 Q&A 445번 답변].

따라서 본 사례처럼 발행일을 2024년 03월 11일,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단, 지급제시기간을 6년 연장한다 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이 2030년 3월 10일에 지급제시할 경우 위 약속어음금의 만기는 2030년 3월 10일이 되고, 약속어음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인 2030년 3월 10일부터 3년이 되는 2033년 3월 10일임.

II. 질의2.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식상의 “지연손해금”의 의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서식상 “제 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의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란 의미에 대하여,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지났어도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할 시,

- 1) 채권압류 신청 시에 “원금 +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까지의 이자 +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압류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으로만 계산하는지?
- 2) 아니면 “위 합산액 +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압류신청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이자제한법 내에서 또는 지연손해금이니까 이자제한법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 3) 위 1)의 계산이 맞다면 촉탁인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물론이

고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시 그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을 원할 시에는 2)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해도 되는지?

- 4) 준소비대차공정증서 양식의 지연손해금 문구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의 지연손해금 문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지?
- 5) 공증촉탁인들도 위 지연손해금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란 문구 때문에 많은 문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 위 1), 2)의 계산방법 중 1)번이 맞는다면 서식 자체를 변경하면 혼동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됨.

〈답변〉

가. 전제사실

- 약정지연손해금이율 적용
질의 사례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서식에 약정지연손해금율이 기재한 경우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임.
-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배제

협회는 일관되게 공증실무Q&A를 통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은 이자에 관한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법률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이자로 간주하므로(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입장을 취하여 회원들에게 회신하였음.

- 본 질의사례와 같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법정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성질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자제한법과 같은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질의 1), 내지 3)에 대한 답변

1)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지연손해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고(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

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 채무 자체에 대해서도 이행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임).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2016. 7.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하였고, 위 채권 전부를 피고 1 등에게 청구하는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 등은 원고들로부터 추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판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함.

(예를 들어 甲이 乙에 대해 변제기 2017. 12. 31.인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乙이 현재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원금 1억 원 외에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음. 만약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甲은 2018. 7. 25. 乙에 대해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금에 대한 2018. 8. 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000만 원에 대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2) 기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 25302 판결).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

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취지에 따라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함.

3) 결론

금전채무의 이자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

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 질의사례의 경우,

채권압류 신청시에 채권자는 청구금액을 “원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까지의 이자,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압류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압류신청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이자제한법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음.

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1) 협회의 의견

대한공증인협회 2018년 10월 8일 공증실무Q&A 183번은,

(질의 : 원금이 100원, 그 동안 발생한 변제기까지의 이자가 10원,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가 24원일 경우, 위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금 134원을 다시 원금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자제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합산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이자제한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인 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체이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되므로, 이자나 위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그 연체이자율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되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을 것임.

반면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체이자 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인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함.

- ① 기존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경우.

② 기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이자 및(또는) 지연손해금을 다시 가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전의 채무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 따라서 종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채무 및 이자채무 등을 불이행하여 그 합계액을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함. 다만 미지급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명목 여하를 떠나 이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히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라고 답변한 바 있음.

2) 소결

준소비대차공정증서 양식의 지연손해금 문구(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연 * %)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의 지연손해금 문구와 특별한 차이

가 없음.

라. 질의 5)에 대한 답변

특별한 의견 없음. ☐

③ 청산종결간주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법인인감 관련 질의 회신(2024. 5. 29.자)

□ 질의 내용

2007. 12. 2. 상법 제502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 종결된 법인으로 회사 사정상 회사 부활 등기를 하고자 하나, 당 회사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주주명부상 도장 날인 및 첨부 인감증명서 대상이 청산인 개인 인감도장날인과 개인인감증명서 첨부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44호(시행 2024. 5. 29.)〉

I. 질의 요지

귀 공증인의 2024. 4. 8.자 ‘청산종결간주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시 주주

명부상 법인도장에 관한 질의' 제목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2007년 12월 2일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회사 사정상 회사 부활등기를 하고자 하나, 당 회사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시 주주명부상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첨부법인인감증명서 대신 청산인 개인인감도장날인과 개인인감증명서 첨부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II.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를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 부속서류인 주주명부에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적법한 대표자(청산인 등)의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주주명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인감증명서의 기능

법인인감증명서는 주주명부 등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도장이 진정

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결국 의사록과 주주명부 등 의사록의 부속서류가 법인 대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2. 법인의 청산종결간주 절차 등

가. 질의 사례와 관련하여 먼저 법인의 청산종결간주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참조).

위와 같이 해산 간주된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해산 간주된 회사가 위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동조 제3항, 제4항 참조).

나. 청산종결간주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 (1) 그런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권리능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4. 30. 90마672 판결).

따라서 해산(간주)법인이나 청산종결(간주)법인과 같이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법인의 회사 계속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나 청산종결(간주)법인의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를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에, 당해 법인이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주명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더라도, 주주명부 등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적법한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제

출한다면 공증인이 법인 대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의사록과 주주명부 등 의사록의 부속서류가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질의 사례와 유사한 공탁 관련 질의 회답 사례에서도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 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회답한 바 있습니다(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단,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그 용지를 보관하고 있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014. 11. 21.시행 등기예규 제1546호 제3조, 제4조 참조).

- (3) 그렇다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등기를 위한 청산종결간주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 부속서류인 주주명부에 주주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적법한 대표자(청산인 등)의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주주명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사록 인증 시 주주총회 의장 자격 등 관련하여 등기예규 (2014. 11. 21.시행 제1546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호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한공증인협회 #공증실무 Q&A 1358번 참조). ☐

☐ 사용인감계 관련 질의 회신(2024. 5. 29.자)

☐ 질의 내용

의사록 인증 시 주주가 은행 및 금융기관 일 때 사용인감계를 주로 제출합니다. 그

런데 은행에서는 사용인감계에 사용인감도장 날인을 전자로 출력하고, 은행의 법인인감도장은 날인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본 공증사무실에서는 위 방법으로 만든 사용인감계를 주면 인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은행이 사용인감도장을 전자로 출력한 사용인감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거를 문서로 제출받기를 위하여 질의합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45호(시행 2024. 5. 29.)〉

I. 질의 내용

의사록인증 시 주주가 은행 및 금융기관일 때 사용인감계를 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사용인감계에 사용인감도장 날인을 전자로 출력하고, 은행의 법인인감도장은 날인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본 공증사무실에서는 위 방법으로 만든 사용인감계를 주면 인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사용인감도장을 전자로 출력한 사용인감계를 사용 못하는 근거를 문서로 제출을 원해서 질의합니다.

II. 답변

사용인감계에 은행의 법인인감도장이 실제로 날인되어 있고, 주주 위임장에 은행사용인감이 실제로 날인되어 있는 경우 사용인감계와 위임장의 은행사용인감 인영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면 비록 사용인감계에 은행사용인감의 인영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력(스캔)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사용인감계를 은행사용인감이 직접 날인되어 있는 사용인감계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증인으로서의 사용인감계에 용도, 제출처, 작성일 등 다른 기재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은행이 제출한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것으로 취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III. 이유

1. 사서증서 대리권 증명 및 확인 방식 - 공증인의 인영 육안 대조

공증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예컨대 위임장)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위임장)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함(공증인법 제 31조 제2항).

이 경우 공증인은 촉탁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법인인감의 인영(스캔한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 즉 공증인법은 대리권 증명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공증인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직접 날인 여부가 아니라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대조를 통해 판단하기에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영란에 현출한 인영이 직접 날인한 것이던 스캔한 것이던 인영의 동일성 여부 판단 방식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따라서 공증인으로서의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법인인감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스캔한 법인인감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후, 사용인감계 상의 사용인감 인영(날인한 것 혹은 스캔한 것)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2. 사용인감계의 법적 근거 및 유효성

사용인감이란 법인이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 도장으로 1개밖에 없는 법인인

감의 분실 우려와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 문서에 대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임. 정부기관, 관공서, 금융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법인 명의 위임장 등에 사용됨.

거래실무상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반드시 첨부하고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함.

법령 사용례를 살펴보면

-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17호)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제5조 (저당권의 이전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86호)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6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2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03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4호)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52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85호)

등에 사용인감계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1998. 1. 8. 법무부 61004-13 지시에 의하면 법인을 대리하여 공증할 경우에 관공서가 작성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반드시 위임장에는 압날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것과 동일하여야 함. 다만, 각 지점 및 출장소 등에서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실무상 신고된 인감 대신 사용인감계를 사용하여 공증을 하고 있으나, 사용인감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

한편 협회는 법인의 사용인감계 사용과

관련하여(공증실무 Q&A 169번), “대리권을 증명할 증거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거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위임장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함.

실무상 사용인감계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에 진정한 것으로 증명한 것은 사용인감계이고, 위임장은 사용인감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것임.

이와 같이 사용인감계의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 사용이 불가피한 회사조차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계를 사용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사용을 불허함이 상당함.”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제35조(인감의 제출) 제3항은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거래실무, 법무부 지시, 협회 의견, 상업등기규칙 등을 종합하면 사용인감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위 상업등기규칙에 있는 영업주의 보증서면에 대응하는 각서 내지 보증서면으로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됨. ☒

⑥ 사서증서 수수료 산출 관련 질의 회신 (2024. 5. 29.자)

□ 질의 내용

아래 내용으로 계약서 인증 시 수수료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 갑은 을로부터 을이 재배한 농산물 전량을 10년간 구매한다.
- 구매금액은 매월 15일, 30일 2회로 하며 그 시점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으로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 중간에 재배자는 재배를 포기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다.

1. 목적가액 산정 불능으로 전체 목적가액 20,000,100원으로 수수료 산출

2. 1년 기준(목적가액 산정 불능으로)
 $20,000,100\text{원} \times 10\text{년} = 200,001,000\text{원}$ 으로
 수수료 산출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46호(시행 2024. 5. 29.)〉

I. 질의 요지

귀 공증인의 2024. 4. 25.자 ‘사서증서
 수수료 문의’ 제목 하에 귀하가 작성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취
 지는 다음과 같은 계약서 인증 시 수수
 료 산정 방법이 1안인지, 아니면 2안인
 지 여부”입니다.

- － 갑은 을로부터 을이 재배한 농산
 물 전량을 10년간 구매한다.
- － 구매금액은 매월 15일, 30일 2회로
 하며 그 시점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으로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 － 중간에 재배자는 재배를 포기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다.

1. 목적가액 산정 불능으로 전체 목적가
 액 20,000,100원으로 수수료 산출
2. 1년 기준(목적가액 산정 불능으로)
 $20,000,100\text{원} \times 10\text{년} = 200,001,000\text{원}$
 으로 수수료 산출

II.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의 사례
 계약의 목적가액은 9,600,048,000원
 {4,800,024,000원(갑의 급부가액) +
 4,800,024,000원(을의 급부가액)} 이므
 로 인증의 기본수수료는 금 500,000원
 입니다(부가수수료 별도).

※ 계산 근거 : {44,000원 + (법률행
 위의 목적가액 9,600,048,000원 -
 15,000,000원) $\times$ (3/2000)} $\times$ 1/2(인
 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
 지 못함.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제1항, 제2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질의 사례의 계약서는 법률행위 증서
 (사서증서)이고, 공증인수수료규칙은
 법률행위 증서 작성 수수료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는 목적가액과 연동하여 정하고 있습니
 다(제20조,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란 법률행위의
 목적을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로 발생, 소멸, 변경되는 권리

나 의무를 평가한 가액이 곧 그 목적가액이 됩니다.

법률행위는 목적가액과 관련하여 이행이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분할 수 있고, 증서의 작성은 주로 의무부담행위 즉 채권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의무부담행위는 그 법률행위로 생기는 의무의 가액, 즉 급부의 가액이 곧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급부란 채무의 내용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2. 급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질의 사례의 매매계약은 갑은 을로부터 을이 재배한 농산물 전량을 10년간 구매하고, 을에게 그 구매대금을 매월 15일, 30일 각 시점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일 변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증서 작성 시점에 미리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갑의 매월 15일, 30일 각 급부(의무)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갑의 상대방인 을의 급부(의무)의 가액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 100원이지만(수수료규칙 제13조 본문), 쌍방 모두에

게 급부가 존재하고 두 급부 모두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므로(수수료규칙 제5조) 각 2천만 100원의 합인 4천만 200원이 됩니다.

3. 정기(定期)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의 산정

질의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이행할 급부의 가액은 매월 15일과 30일 각 정기(定期)에 10년간 지급할 채권의 가액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정기(定期)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전기간(全期間)에 지급할 채권 가액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수수료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최장기간을 설정하여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수수료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질의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이행할 급부의 가액은 월 2회씩 전기간(10년)에 지급할 채권 가액 총액인 4,800,024,000원(2천만 100원×2회×12개월×10년)입니다.

한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는 어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이 위와 같이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경우 그 상대방의 급부의 가액은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정기에 지급할 위 채권의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수수료규칙 제10조 제3항). 이는 쌍방의 급부의 가액은 대체로 동가성이 인정되는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이 결정되므로 상대방의 급부의 가액도 그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공증실무 개정판 제199~200쪽 참조).

따라서 갑의 상대방인 을이 갑에게 이행할 급부(농산물 인도)의 가액은 갑이 을에게 정기에 지급할 위 채권의 가액인 4,800,024,000원입니다.

4. 질의 사례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및 공증 수수료

그렇다면 질의 사례 계약의 목적가액은 9,600,048,000원 {4,800,024,000원 (갑의 급부가액) + 4,800,024,000원 (을의 급부가액)}이므로 인증의 기본 수수료는 금 500,000원입니다(부가수수료 별도).

※ 계산 근거: {44,000원 +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9,600,048,000원 - 15,000,000원) × (3/2000)} × 1/2 (인

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제1항, 제2조). ☐

㉚ 번역문 인증 관련 질의 회신(2024. 10. 8.자)

□ 질의 내용

번역문 인증 시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 계약서가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미완성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외국회사가 한국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할 계약서 양식으로 필요하다는 번역문 인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문 계약서에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내용만 작성된 문서를 원문으로 보고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 문서가 계약서 샘플이나 양식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76호(시행 2024. 10. 8.)〉

1. 질의 요지

2024. 8. 30.자 접수 귀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관련 질의’ 취지의 요지는, “번역문 인증 시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 계약서가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원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 문서가 계약서 샘플이나 양식으로 표시된 경우 이를 원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쟁점과 관련 규정

질의 사안의 쟁점은 번역문 인증 시 원문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직접 관련된 법 규정(공증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나 법무부의 지침은 없습니다.

3. 번역문 인증의 특수성

번역문 인증은 당해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다는 서약서에 대한 인증이라는 점에서 사서증서의 인증의 일종이나 그 번역자의 번역능력을 따로 확인하는 등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다른 특수성도 가집니다.

번역문 인증서를 제출받는 사람(기관) 등은 그것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라는 측면에서 그 원문이 진정성립문서라고 오인 혼동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진정성립이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 원문에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미완성 문서의 경우에는 번역문 인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역문 인증은 당해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다는 서약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원문이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문제 삼아 인증을 거부할만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 전문서적의 일부,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원문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번역문 인증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계약서나 합의서 등 진정성립이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 원문에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미완성 문서의 경우에는 번역문 인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번역문 인증은 당해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다는 서약에 대한 것이라는 점

에서는 원문이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를 문제 삼아 번역문 인증을 거부할 수 있을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협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아래의 기존 공증실무 Q&A들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증실무Q&A

(300) 법인 대표가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한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 가부 등?

□ 질의내용

(2) 번역문 인증 시 원문에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

(2) 번역문 인증 시 원문에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미완성문서에 해당되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번역문 인증을 거절함이 바람직함. ▣

공증실무Q&A

(100) 날인되지 않은 경력증명서의 번역문 인증 가부?

□ 질의내용

경력증명서에 작성자의 기명만 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상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당연히 필요함에도 그것이 없는 서면을 원문으로 삼아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당연히 필요한 서류임.

따라서 사용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빠진 경력증명서를 원문으로 한 번역문 인증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로 내용상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서면을 원문으로 한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 예로는 안내서, 설명서, 카탈로그, 전문서적 등이 있음. ▣

4. 질의 사안의 해결

가. 번역문 인증 시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 계약서가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에 그 원문은 진정성립이 중요한 문서로서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당연히 필요한 문서이기는 하나, 그것을 원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을 거부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원문에 대한 번역문 인증이 가능합니다.

나. 번역문 인증 시 영문으로 작성된 원문 계약서가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만 기

재되어 있는 문서이지만 계약서 샘플이나 양식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문 기재 자체로 어떤 법률효과를 발휘하는 진정성립 문서가 아니라 샘플이나 양식에 불과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원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⑧ 공증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2024. 10. 18.자)

□ 질의 내용

1.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및 제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 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인증행위) ①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2. 위 두 규정을 종합할 때, 진술서나 확인서의 경우 그 서면의 제목과 무관하게, 해당 문서의 내용에 법률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가액을 산정하여 공정증서 수수료의 반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법률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2천만 100원으로 간주하여 25,570원을 수수료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런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공증수수료 안내”라는 조건표에 따르면, 해당 문서의 법률행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서 및 진술서의 인증”은 그 수수료가 1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청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무자

들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목적가액이 없는 인증의 경우 25,750원이 옳은지, 아니면 “공증수수료 안내”에 기재된 대로 12,500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귀 협회의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83호(시행 2024. 10. 18.)>

1. 질의 요지

2024. 10. 10.자 접수 귀 공증인가 법인(대표번호사 ○○○)의 ‘공증수수료 질의’ 취지의 요지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을 종합할 때, 진술서나 확인서의 경우 그 서면의 제목과 무관하게 해당 문서의 내용에 법률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가액을 산정하여 공정증서 수수료의 반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법률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2천만 100원으로 간주하여 25,750원을 수수료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공증수수료 안내’라는 조건표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 법률행위가 기

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서 및 진술서의 인증’은 그 수수료가 1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청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목적가액이 없는 인증의 경우 25,750원이 옳은지, 아니면 ‘공증수수료 안내’에 기재된 대로 12,500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 협회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수수료 산정에 관한 총설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출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지침 및 해석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5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2조 각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란 법률행위의 목적을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로 발생, 소멸, 변경되는 권리나 의무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2천만 100원으로 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관계없이 공증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도 있는데, 정관이나 의사록 인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참조), 위임장(실질적 위임약정이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대리권 수여 사실만을 표창하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이나 법무사에 대한 등기위임장 등의 경우) 인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의2 참조) 및 번역문 인증(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7조 참조) 등이 그 예입니다.

3. 질의 사안의 해결

가. 진술서나 확인서의 내용에 목적가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에 따라 목적가액을 2천만 100원으로 보아 25,750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사서증서에 법률행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목적가액을 2천만 100원으로 간주하여 25,750원의 수수료를 받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한편 진술서나 확인서의 내용에 진술인이나 확인인 자신이 어떤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받아야 하는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목적가액이 됩니다.

나. 질의 내용에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공증수수료 안내’라는 조건표”라고 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당시 공증 수수료 규칙 개정에 따른 회원 사무소에 대한 공증수수료 포스터(벽에 부착하는 형태) 수정본을 배포하면서 회원 사무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A4 형태로 협회가 제작하여 배포했던 안내문이나, 그 내용 중 확인서 및 진술서의 인증 수수료가 12,500원인 것처럼 인쇄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 후 확인서(선언서)나 진술서의 공증수수료에 대한 본 협회의 안내문이 각 회원 사무소에 여러 차례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1. 6. 14.의 ‘정관 확인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안내 및 시행일자 2023. 1. 27.의 ‘사서증서(진술서 또는 확인서) 인증 수수료 산정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회람’ 등이 그것입니다.

다. 한편 초청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관계없이 공증 수수료 가 결정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에 관하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 제3항과 같은 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로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 피초청인 5명까지 2만 5천 원, 그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0분의 5인 12,500원이 그 공증수수료입니다. ☐

⑨ 집행문 부여 요건 관련 질의 회신(2024. 11. 25.자)

□ 질의 내용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증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지만 지급 기일 전에 집행문 부여 요구 시를 전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상의 당연기한이익 상실조항인 제6조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1회라도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조항인 제

7조의 제3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한 때, 조세채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받은 때 등의 입증 서류 등을 공증실에 제출·입증하지 못하고 집행문을 요구 시,

단순 실권약관 조항으로 취급되는 “1회라도 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을 지체 시”를 제외한 위 조항 모두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게 하여 조건성취 집행문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판결에 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기한이익 상실조항으로 보고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닌 집행개시 요건으로 보는지요?

[※ 공증실무 Q&A 사례에는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아도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공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도 있고(7일이 경과하면 명백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기한이익 상실조항과 관계없이 무조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뜻으로 읽힘), 위 기한이익 상실조항은 조건성취로 보아 채권자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집행문 부여를 하면 아니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4-92호(시행 2024. 11. 25.)〉

1. 질의 요지

2024. 11. 11.자 접수 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집행문 부여 요건’이라는 제목하의 질의취지의 요지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에 대하여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 제6조 각호와 제7조 각호 중 이른바 실권약관 조항으로 취급되는 제6조 제3호(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를 제외한 각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게 하여 조건 성취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집행문부여 요건이 아닌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는지 및 전자로 보는 경우에는 단순 집행문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의 조건과 집행문 부여의 요건

강제집행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란 민법상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이나 그 밖에 즉시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여 집행문 부여 시에 조건이 성취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는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채권자의 선급부, 채권자의 최고, 선택권 행사 등과 기한의 이익 상실인 ‘타인으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은 때’, ‘영업을 폐지한 때’, ‘담보물건을 훼손한 때’ 등의 사유에 매인 때에는 그러한 사실 발생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무상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집행문 부여 시에 조건이 성취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는 해제조건, 대상적 급부, 이른바 실권약관(失權約款) 등이 있습니다.

3. 질의 사안에 대한 답변

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에 대하여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공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 제6조 각호와 제7조 각호 중 이른바 실권약관 조항으로 취급되는 제6조 제3호(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를 제외한 각 경우의 사실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게 하여 그 증명서를 제출받고 조건성취 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나. 한편 채권자가 공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조건의 성취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단순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행 자체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개시 단계에 집행법원에 집행개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의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 제6조 각호와 제7조 각호 중 이른바 실권약관 조항으로 취급되는 제6조 제

3호(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를 제외한 각 경우의 사실 발생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 단순집행문으로는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이 개시되려면 이행일시가 도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이행일시가 도래하였다고 하려면 조건 성취 증명서 등본의 채무자 등에 대한 송달이 필요한데, 조건 성취 증명서 등본의 발송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채권자가 공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조건의 성취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단순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그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 제6조 각호와 제7조 각호 중 이른바 실권약관 조항으로 취급되는 제6조 제3호(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를 제외한 각 경우의 사실 발생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기타 주요 활동

① 공증인 수수료 현실화 건의 활동

(1) 법무부장관 예방

- 박종순 협회장은 2024. 4. 29.(월) 15:0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취임 축하 인사 겸 협회의 최대 현안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 현실화를 위한 개정 방안 등을 적극 건의함. 이날 예방 시 협회에서는 오재창·김정태 부협회장, 배영철 교육이사가 동행했으며, 법무부에서는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배석함.

(2) 법무실장 예방

- 박종순 협회장은 2024. 10. 28.(월) 15:0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상엽 법무실장을 예방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 현실화를 위한 개정 방안 등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법무부 측에서는 전자공증 이용률 제고를 위한 협회의 협조를 구함. 이날 예방 시 협회에서는 오재창·정연복 부협회장이 동행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시전 법무과장과 김신우 서기관이 배석함.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견태 위원 예방

- 박종순 협회장은 2024. 11. 15.(금) 10:30,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견태 위원(더불어민주당)을 예방하고, 국회 차원의 공증인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함. 이날 예방 시 협회에서는 오재창·정연복 부협회장이 동행했음.

② 법무부와 의 제9차 공증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 2024. 3. 22.(금) 16:00~16:50
 □ 장소 : 법무부 서초동 회의실
 □ 참석 : (1) 협회 - 박종순협회장, 김정태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배영철 교육이사
 (2) 법무부 - 김유완 검사, 조원휘·나정옥 공익법무관
 □ 논의 : (1) 법무부장관 예방 시 협회 업무보고(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2) 협회 건의 사항 논의
 ① 공증 서류에 대한 날인제도 개선 방안 건의
 ② 공증인의 사임, 퇴직과 임명에 대한 개선 방안 건의
 ③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의

③ 편집위원회 구성

□ 임기 : 임명일(2024. 6. 26.)부터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순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사무소 또는 소속	자격취득사유	비고
1	위 원 장	이 점 인	1959. 1. 2.	법무법인 우리들	제30회 사법시험	부협회장
2	부위원장	정 형 근	1957. 4. 11.	법무법인 한미	제34회 사법시험	
3	간 사	류 혜 민	1976. 11. 1.	공증인 류혜민 사무소	제46회 사법시험	공보이사
4	위 원	김 종 우	1977. 7. 21.	법무법인 새한양	제1회 변호사시험	
5	(외부인사)	김 동 현	1978. 3. 1.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민소법)
6		김 상 영	1959. 4. 3.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7회 사법시험	교수(민소법)

④ 권역별 회원 간담회 4회 개최

(1) 2024년도 제1차 간담회(수원지검 소속 회원 대상)



□ 일시 : 2024. 4. 26.(금) 12:00~13:00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인근 중식당
(더차이)

□ 참석 : 김호회(공증인가 법무법인

도우화산) 회원 등 6명 및 임
원 6명 등 총 12명

□ 내용 : 공증제도 개선 회원 의견 청취.

- ① 목적가액 산정불능 시 가액 기준 2,000만 100원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경우와 같이 5,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
- ② 공증인 정년 연장의 필요성 논의
- ③ 공정증서 작성 시 서명날인 제도 개선 요청
- ④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촉탁인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 ⑤ 유언공정증서 통합 보관 서비스 제도에 대한 연구 건의
- ⑥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유언공정증서의 홍보 요청

(2) 2024년도 제2차 간담회(인천지검 소속 회원 대상)



- 일시 : 2024. 5. 10.(금) 12:00~13:20
- 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인근 한식당 (경복궁)
- 참석 : 김중선(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일) 회원 등 3명 및 임원 3명 등 총 6명
- 내용 : 공증제도 개선 회원 의견 청취
 - ①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을 위한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조 체계 마련 등 실질적 개정 추진
 - ② 직무집행구역 외 출장 가능한 공증 업무 확대 건의
 - ③ 공증인에 의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제도 추진 건의
 - ④ 협회 또는 법무부 차원의 유언공정 증서 작성 정보 검색 서비스 제도 연구
 - ⑤ 유언공정증서상 집행자의 보수 책정 가부에 대한 법리 검토 요청
 - ⑥ 공증 건수 감소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요청

(3) 2024년도 제3차 간담회(광주지검 소속 회원 대상)



- 일시 : 2024. 5. 24.(금) 11:45~13:10
- 장소 : 광주지방검찰청 인근 한식당 (미미원)
- 참석 : 이철환(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회원 등 7명 및 임원 4명 등 총 11명
- 내용 : 공증제도 개선 회원 의견 청취
 - ①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요청
 - ② 공정증서 작성 시 서명날인 제도 개선 요청
 - ③ 증서 작성 후 오기된 경우 공증인 법상 경정 제도 도입 요청
 - ④ 전자상거래상 계약 등에 대한 공정 증서 작성 제도 도입 등 직역 확대 방안 모색 건의
 - ⑤ 유언대용신탁계약의 공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법리 연구 건의
 - ⑥ 적법한 공증 업무임에도 부당하게 공증인이 피소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공증인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 요청.

- ⑦ 법률 해석상 실무 처리 방법(수수로 산정 등)이 다른 경우 통일된 지침 마련 요청
- ⑧ 공증 홍보를 위한 협회 차원의 유튜브와 같은 SNS 운영 등의 건의

(4) 2024년도 제4차 간담회(대전지검 소속 회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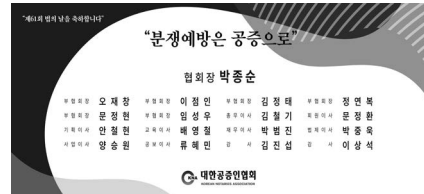


- 일시 : 2024. 6. 28.(금) 12:00~13:30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인근 한식당 (마실)
- 참석 : 유재복(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회원 등 5명(임원 포함)
- 내용 : 공증제도 개선 회원 의견 청취
 - ① AI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과 공증제도 영역 확장 요청
 - ② 서명날인 제도 개선 건의
 - ③ 화상공증 수수료 인상 건의
 - ④ 집행증서 작성 시 대부업자 등의 쌍방대리 금지 지침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5 공증제도 및 협회 홍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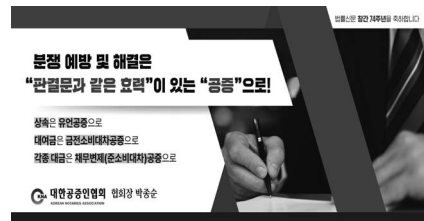
(1) 제61회 법의 날 축하 신문 광고 협찬

- 제61회 법의 날(4. 25.) 축하 광고를 2024. 4. 25.자 목요일판 제5172호 법률신문 6면 하단에 게재함.



(2) 법률신문사 창간 74주년 축하 신문 광고 협찬

- 법률신문사로부터 요청받은 법률신문 창간 74주년 축하 광고를 2024. 12. 2.자 월요일판 제5230호 법률신문 17면 하단에 게재함.



(3) CBS 라디오 캠페인 광고 진행

- CBS 라디오 표준 FM “김현정의 뉴스쇼(방송 시간 오전 7:20~9:00, 레인보우 APP 포함)” 방송 중 8:34경에 협회 및 공증제도 홍보를 위

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가 2024. 9. 한 달간 전국에 방송되었으며, 방송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협회장 멘트)

대한공증인협회장 박종순입니다.
여러분은 공증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공증을 받아두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언 공증을 받아두면,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유언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아나운서 멘트)

이 캠페인은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합니다.

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2024. 11. 말, 각 회원사무소에 4부씩 발송 (택배)함.

(2) 2024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7호) 발간

- ☐ 공증 관련 논문 및 2023년도 주요 회무를 게재한 기관지 『공증과 신뢰』의 2024년도 통권 제17호를 2024. 11. 30.자로 발간하고, 12. 30. 각 회원 사무소 등에 발송함.

가. 게재 내용

- ☐ 시론 - 공증인 수수료에 대한 단상(斷想) / 박종순 협회장
- ☐ 논문 - ① 임명공증인의 소송사건 수임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법무부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 정형근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 ② 고령자 보호와 공증(유언공증, 임의후견, 민사신탁을 중심으로) / 서성운 이사(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 ☐ 국제회의참관기 - 2024 CAAs 우즈베키스탄 회의 참관기

⑥ 출판 및 홍보 활동

(1) 2025년도 달력 제작 및 배포

- ☐ 2024년도 달력과 동일한 형태의 2025년도 달력(3단 형태, 기성품)을 구매한 후, 달력 하단 여백에 협회 로고 및 “분쟁예방은 공증으로”

/ 오재창 부협
회장

- ☐ 협회 제·개정 회규
- ☐ 협회 주요 회무(2023년도)

나. 인쇄 및 배포

- ☐ 총 290면으로 간행되어 580부를 인쇄한 후, 2024. 12. 30.자 안내 공문과 함께 발송함.
- ☐ 회원 사무소 및 공증업무대행청, 법무부 및 각 필진, 법원, 검찰, 변호사회, 국공립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유관기관 등 500개소에 1부씩 배포함(단, 법무부 5부, 논단 필진 4부, 도서관 3부).

7] UINL(국제공증인연합회) 산하 CAAs(아시아지역위원회) 국제업무 활동**(1) 2024년도 제2차 CAAs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

- ☐ 일시 : 2024. 6. 4.(화) 14:00~16:15
-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 ☐ 참석 : 박종순 협회장, 오재창 부협 회장
- ☐ 내용 : ① 각 회원국 공증실무 중 '부

동산 등기의 특징과 현안' 발표

- ➡ 협회는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와 공증인의 역할” 발표(오재창 부협회장)

② 기타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제안 사항 논의

- CAAs 회원국 간 친목 협력 강화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논의
- UINL 차원의 세계공증대학(World Notariat University)을 모티브로 한 국제 연수의 일종인 아시아 회원만의 특수한 공증인 연수(training) 프로그램으로 “CAAs 공증 대학” 도입 논의

(2) 2024년도 CAAs 정기회의(총회) 겸 국제회의 참석

- ☐ 주최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NCU)
- ☐ 일시 : 2024. 9. 10.(화)~2024. 9. 11.(수) / 행사 일정 기준
 - ➡ 항공 및 이동시간 기준 출장 일정 : 2024. 9. 7.(토) ~ 2024. 9. 14.(토)
- ☐ 장소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소재 실크로드 바이 민윤(Silk

Road by Minyoun) 호텔

□ 참석 : 박종순 협회장, 오재창 부협
회장, 김창호 사무국장 등 3명

□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① 2025년도 CAAs 위원장에 만장
일치로 몽골공증인회 회장을 추
대하기로 합의함.

➡ 2024. 11. 6.~9. 포르투갈 리스본
에서 개최된 UINL 정기총회에서 최
종 선임됨.

②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가 주장
했던 인턴십 제도, 아시아 공증
대학 및 공증저널 간행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요청에 대하여는, 한
국 및 일본 대표단 등 일부 회원
국을 위주로 동 사안들이 사전에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서 토론도 없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의 의사를 피력하였음
(최종 의사록에 우즈베키스탄공
증인회가 주장한 인턴십 제도 등
의 제안 내용은 기재되지 않음).

③ 토론 주제 발표

- 각 회원국의 전자공증의 고도
화사업에 대한 현황 발표
(2024년도 CAAs 총회 주제
- 협회장 발표)
- 상속등기의 특수성
(NCU 주최 제4차 국제회의의 주

제 - 오재창 부협회장 발표)

※ 2024년도 CAAs 회의 겸 제4차 국제회의
에서 각 회원국 및 국제회의 참가국이 주
제발표한 내용은 기록 차원에서 2024년도
『공증과신뢰』 국제회의 참관기 부록으로
발표문 원문과 국문 번역문을 함께 게재해
두었음.

⑧ 기타

(1) 협회 공문서 전자우편 발송 시행

□ 협회는 2023. 8. 23. 개최된 제9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체 회
원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는 협회
장 명의의 제반 공문서를 등기 우편
에 의한 서면 발송이 아닌 전자우편
(E-mail)을 통한 온라인 발송으로
그 통지 방법을 변경하여 2024. 1.
1.부터 시행함.

가. 전자우편 공문 수신자

- 공문서 전자우편 수신자로 협회
에 신고한 정회원(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대표공증담당
변호사) 1인 및 공증사무직원 1
인 등 총 2인

나. 전자우편 발송 대상 공문서 종류

- ① 전체 회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파하는 모든 공문서
- ② 회의 기구별 구성원 또는 권역별 회원에게 통지하는 모든 공문서
- ③ 개별 정회원에게 발송하는 공문서 중 수신 대상 정회원이 전자우편으로 수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의 공문서
- ④ 그 외 상임이사회가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정하는 공문서

다. 전자우편 발송 제외 공문서 종류(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

- ① 회원 이외의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발송하는 공문서
- ② 전체 회원에게 동일한 내용이지만 배포하는 자료가 도서 또는 포스터 등 실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의 공문서
- ③ 신규 입회 회원에 대한 공증 업무 수행에 따른 공증 관계 법령 준수 협조 요청 안내 공문서
- ④ 회원별 연회비 납부 안내 공문서
- ⑤ 선거운동방법 위반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 공문서
- ⑥ 조사위원회의 조사방법 중 서면으로 조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서

- ⑦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에 따른 비위정도별 상임이사회의 서면경고 의결 공문서
- ⑧ 회칙 또는 회규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경우의 공문서
- ⑨ 그 외 상임이사회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정하는 공문서

(2)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정회원에 대한 안내 시행

- 협회 회의 기구 중 상임이사회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정기 회의부터 회의에서의 보고 및 의결 사항을 협회 정회원에게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 다만, 내용 중 개인정보의 경우는 그 사항을 비실명화하며, 회칙 또는 회규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해진 내용 또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회원 안내 시 제외하고 있음.

2024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24. 1. 4.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신”에 관한 재검토 요청 건의 / 법무부
- 2024. 1. 9. : 법무부의 2024년 공증사무 정기검열대상 회원사무소 안내 / 회원
- 2024. 1. 10.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의 공증인 정년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국제담당
- 2024. 1. 12. : 2023년도 『공증과신회』 (통권 제16호) 배포
- 2024. 1. 16. : 202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 ○○ ○ 사무소 공증업무 질의(어음공정증서 관련) 회신 논의 ②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업무 질의(집행증서 관련) 회신 논의 ③ 2023년도 『공증과신회』 논단 등 원고료 책정·지급 논의 ④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검토 ⑤ 기타 논의
- 2024. 1. 19. : 어음공정증서 관련 공증업

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 ○○○

- 2024. 1. 19. : 집행증서 작성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1. 23. : 2024년도 제1차 CAAs 온라인 회의 참석 여부 및 안전 등에 대한 협회 의견 회신 / 2024년도 CAAs 위원장(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 2024. 1. 30. : 2023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 보고 / 법무부
- 2024. 2. 20. : 2024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4년도 사업계획(안) 논의 ②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논의 ③ 협회지 간행에 관한 규칙(안) 논의 ④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⑤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⑥ 제18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제도 및 협회 홍보용 라디오 광고 시행 논의 ⑦ 회원 진정서(재개발조합 등의 참석인증 수수료 기준 관련) 처리방향 논의 ⑧ 기타 논의
- 2024. 2. 29. :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 2024. 2. 29. :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 (원안 가결) ②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안) 승인 (원안 가결) ③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안) 승인 (원안 가결) ④ 협회지간행에 관한 규칙(안) 승인 (원안 가결) ⑤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승인 (원안 가결)
- 2024. 3. 6. :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통지 / 회원 및 법무부
- 2024. 3. 7. : 제3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3. 8. : 재개발 재건축 정기사업조합 등의 총회 참석 시 검사 수수료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 법무부
- 2024. 3. 13. : 2024년도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통지 / 법제위원회 위원
- 2024. 3. 14. : 2024년도 제1차 국제위원회 회의 개최 통지 / 국제위원회 위원
- 2024. 3. 14. : 제4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3. 15. : 제9차 공증실무협의회 참석 예정자 안내 및 공증제도 개선 논의 자료 제출 / 법무부
- 2024. 3. 19. : 2024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전자우편발송 공문서 등 구체적 기준 논의 ② 법무부 발행 『공증관련 질의회답 사례』 오류 수정 건의 논의 ③ 제18회 공증주간 기념 CBS 라디오 광고 구체적 시행 방안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3. 21. : 제5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3. 22. : 법무부와 협회 간 제9차 공증실무협의회 개최
 ▶ 논의 사항 : 법무부장관 예방 시 협회 업무보고 및 건의 사항 논의

❖ 협회 건의사항

- ① 공증서류에 대한 날인제도 개선 방안 건의
- ② 공증인의 사임, 퇴직과 임명에 대한 개선 방안 건의
- ③ 유연공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의

- 2024. 3. 28.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의견 요청서 회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원 형사4단독

- 2024. 3. 30. :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가결) ②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승인 (원안 가결) ③ 협회지 간행에 관한 규칙 승인 (원안 가결)
- 2024. 4. 4. : 대한공증인협회 2024년도 정기총회 결과 안내 및 회원명부 송부 / 회원
- 2024. 4. 4. : 초국경부모지원 및 이혼 관련 설문조사 회신 / UINL
- 2024. 4. 4. : 제6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 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4. 8. : 2024년도 제1차 권역별(수원지방검찰청 관할)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수원지검 관할 내 회원
- 2024. 4. 12. : 2024년도 CAAs 위원장이 제안한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 협회 의견 회신 / 2024년도 CAAs 위원장(우즈베키스탄 공증인회)
- 2024. 4. 12.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

의 제출명령 회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 2024. 4. 12. : 대한공증인협회 2024년도 정기총회 결과 보고 / 법무부
- 2024. 4. 15. : 2024년도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장 선임 ②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 ③ 향후 법제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4. 16. : 2024년도 제2차 권역별(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인천지검 관할 내 회원
- 2024. 4. 17. : 2024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지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지침안 제정 ②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업무 질의(약속어음 공정증서 시효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관련)에 대한 회신 논의 ③ 전자공정증서 작성 등에 관한 개선 방안 건의안 검토 ④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요청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방향 논의 ⑤ 기타 논의

- 2024. 4. 18. : 제7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4. 23. : UINL 회원국 분담금(연회비) 위원회 설문조사 회신 / 2024년도 CAAs 위원장(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 2024. 4. 25. : 제61회 법의 날 축하 광고 법률신문(제5172호) 게재
- 2024. 4. 25. : 약속어음 시효 및 금전소비대차 지연손해금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4. 26. : 전자공정증서 작성 프로그램(안)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 / 법무부
- 2024. 4. 26. : 2024년도 제1차 권역별 수리지검 소속 회원 간담회 개최
- 2024. 4. 30.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에 관한 회신(법무부의 유권해석 회신 포함)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5. 8.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 / 회원
- 2024. 5. 9. : 2024년도 제3차 권역별(광주지방검찰청 관할)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광주지검 관할 내 회원
- 2024. 5. 10. : 2024년도 제2차 권역별 인산지검 소속 회원 간담회 개최
- 2024. 5. 13. : 2024년도 제1차 국제위원회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장 선임 ②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 ③ 향후 국제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5. 22. : 2024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18회 공증주간 기념 CBS 라디오 캠페인 광고 문구 논의 ②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해설 회원 안내 논의 ③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업무 질의(사용인감계 관련)에 대한 회신 논의 ④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업무 질의(청산종결간주 법인 의사록 인증 관련)에 대한 회신 논의 ⑤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업무 질의(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관련)에 대한 회신 논의 ⑥ 법무부 발행 『공증관련 질의회답 사례』 오류 수정 건의 논의 ⑦ 기타 논의
- 2024. 5. 24. : 2024년도 제3차 권역별 광주지검 소속 회원 간담회 개최

- 2024. 5. 28. : 제8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5. 29. : 일본공증인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축하인사 서한 발송 / 일본공증인연합회 회장
- 2024. 5. 29.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주최 국제세미나 초청에 대한 불참 안내 서한 발송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회장
- 2024. 5. 29. : 청산종결간주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시 주주명부상 법인도장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5. 29. : 사용인감계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5. 29. : 사서증서 수수료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5. 30. : 2024년도 제4차 권역별(대전지방검찰청 관할)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대전지검 관할 내 회원
- 2024. 6. 4. : 제9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6. 19.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에 대한 해설 / 회원
- 2024. 6. 26. : 2024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②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요청 양해(협력)각서 체결 여부 논의 ③ 법무부 발행 『공증관련 질의회답 사례』 오류 수정 건의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6. 27. : 제10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6. 28. : 2024년도 제4차 권역별 대전지검 소속 회원 간담회 개최
- 2024. 7. 5.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의 양해(협력)각서 체결 요청에 대한 협회 측 문의 서한 송부 / 2024년도 CAAs 위원장(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 2024. 7. 5. : 2024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24. 7. 5. : 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통지 / 편집위원회 위원

- 2024. 7. 10. : 제11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7. 11.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창립 116주년 축하 서한 송부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 2024. 7. 11. : 2024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7호) 게재 원고 모집 / 회원
- 2024. 7. 12. : 2024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통지 / 편집위원회 위원
- 2024. 7. 17. : 2024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협조 관련 업무처리방향 논의 ② 기타 논의
- 2024. 7. 24. : 2024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장 선임 ②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 ③ 향후 편집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7. 25. : 제12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7. 26.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관련한 공증업무 처리지침 시달 요청 건의 / 법무부
- 2024. 7. 29. : 2024년도 CAAs 위원장이 제안한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협회 의견 회신 / 2024년도 CAAs 위원장(우즈베키스탄 공증인회)
- 2024. 8. 8. : 사업체 등록에 대한 기업 공증 관련 질의 회신 / 베트남공증인협회
- 2024. 8. 12. : 2024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7호) 게재 원고 모집 재안내(신청 기한 연장) / 회원
- 2024. 8. 21. : 2024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요청 양해각서 체결 여부 재논의 ② 베트남국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방문 협조 요청 논의 ③ 일본 법무성 총무과장 등 협조 요청 논의 ④ 유언공증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⑤ 기타 논의
- 2024. 8. 22. : 2024년도 CAAs 총회 겸 제4차 국제회의 주제발표문 송부 / 2024년도 CAAs 사무국(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 2024. 8. 29. : 공증제도 홍보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시행 안내 / 회원
- 2024. 8. 29.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의 양해(협력)각서 체결 제안에 대한 협회 최종 의견 회신 / 2024년도 CAAs 위원장(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 2024. 8. 30. : 인가공증인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재인가 신청 안내 / 인가공증인 유효기간 만료 예정 회원
- 2024. 9. 1.~3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중 라디오 캠페인 광고 송출
- 2024. 9. 10.~11. : 2024년도 CAAs 정기회의(총회) 겸 국제세미나 참석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2024. 9. 24. : 베트남국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협회 방문
- 2024. 9. 25. : 2024년도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 ○○○ 사무소 공증업무 질의(번역문 인증 관련)에 대한 회신 논의 ② 협회장 및 감사 선거규칙 개정 TF 구성 논의 ③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재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10. 8. : 번역문 인증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 ○○○
- 2024. 10. 10. : 번역문 인증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회람 / 회원
- 2024. 10. 11. :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 / 회원
- 2024. 10. 11. : 일본 법무성 총무과장 등 협회 방문
- 2024. 10. 11.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주최 2024 CAAs 회의 성료에 대한 감사 서한 발송 / 2024년도 CAAs 위원장(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 2024. 10. 14. : 2024년도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가 법무법인 ○○ 질의(확인서 등 수수료 관련)에 대한 회신 논의 ② 『공증실무』 전정판 출판 계약서(안) 검토 논의 ③ 법무부장관 표창 대상 공증업무유공자 추천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10. 17. : 몽골공증인회 회장의 2025년도 CAAs 업무 제안 요청에 대한 회신 / 몽골공증인회

- 2024. 10. 18. : 공증수수료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10. 23. : 2025년도 장부 조제·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24. 10. 28. : 정부24(전자민원창구)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질의 / 법무부
- 2024. 11. 15. : 2025년도 공증 장부 제공 / 공증업무 대행청 13곳
- 2024. 11. 20. : 2023년도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률신문사 창간 74주년 축하 광고 게재 요청에 대한 논의 ② 전자공증(화상공증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③ 『공증실무』 전정판 인쇄(발간) 업체 선정 논의 ④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업무 질의(집행문 부여 요건 관련) 회신 논의 ⑤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논의 ⑥ 기타 논의
- 2024. 11. 25.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590호) 관련 의견 제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4. 11. 25. : 집행문 부여 요건 관련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11. 30. : 2025년도 협회 달력 회원사무소 배포
- 2024. 12. 2. : 법률신문 창간 74주년 축하 광고 법률신문(제5230호) 게재
- 2024. 12. 5. : 정부24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안내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4. 12. 6. : 정부24 발급 인감증명서 관련 법무부 추가 유권해석 안내 / 회원
- 2024. 12. 14. : 제13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12. 16. : 제14차 공증실무(전정판) 간행위원회(TF) 회의 개최
- 2024. 12. 18. : 2024년도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실무』 전정판 제명(표지명) 재논의 ② 2024년도 『공증과신평』 논문 등 원고료 책정·지급 논의 ③ 화상공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회원 설문

조사(안)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4. 12. 30. : 2024년도 『공증과신회』
통권 제17호 배포
- 2024. 12. 30. : 제1차 협회장 및 감사 선
거규칙 개정 TF 회의 개최
- 2024. 12. 31. : 제주항공 참사 애도서한에
대한 감사 서한 회신 / 카자흐스탄공증인회
회장

2024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1. 회원 입회

(공증인 임명 및 인가)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중용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가일 : 2023. 12. 20.
- 인가유효기간 : 2028. 12. 19.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이승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5층(서초동, 정보통신공제
조합빌딩) ☎ 06633
- 전 화 : 02-523-2027
- 팩 스 : 02-523-2028
- 입회일 : 2024. 2. 6.

◆ 공증인 공영일 - 소속 부산지검

- 임명일 : 2024. 3. 28.
- 임 기 : 2029. 3. 27.까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
202호(거제동, 보은빌딩)
☎ 47511
- 전 화 : 051-715-3445
- 팩 스 : 051-715-3447
- 입회일 : 2024. 4. 22.

◆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진 - 소속 부산지검

- 인가일 : 2024. 3. 28.

- 인가유효기간 : 2029. 3. 27.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손준호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2층·5층 (거제동, 포커스
빌딩) ☎ 47511
- 전 화 : 051-711-2770
- 팩 스 : 051-711-2771
- 입회일 : 2024. 5. 2.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 소속 부산
지검

- 인가일 : 2024. 3. 28.
- 인가유효기간 : 2029. 3. 27.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정 민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
길 7, 2층~3층 (거제동, 와
우빌딩) ☎ 47511
- 전 화 : 051-714-3535
- 팩 스 : 051-714-3463
- 입회일 : 2024. 5. 20.

◆ 공증인가 법무법인 제주로 - 소속 제주
지검

- 인가일 : 2024. 7. 3.
- 인가유효기간 : 2029. 7. 2.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김승석 변호사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중앙로 308, 4
층 (이도2동) ☎ 63222
- 전 화 : 064-722-5073
- 팩 스 : 064-753-8248
- 입회일 : 2024. 7. 9.

◆ 공증인 김균영 - 소속 전주지검

- 임명일 : 2024. 7. 3.
- 임 기 : 2029. 7. 2.까지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검다메1길 42,
1층 (조촌동) ☎ 54079
- 전 화 : 063-453-2277
- 팩 스 : 063-453-2255
- 입회일 : 2024. 8. 20.

◆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안 - 소속 서울중앙
지검

- 인가일 : 2023. 3. 6.
- 인가유효기간 : 2028. 3. 5.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안성용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2층 (서초동, 대한금속
재료학회 회관) ☎ 06633
- 전 화 : 02-525-3001
- 팩 스 : 02-525-3002
- 입회일 : 2024. 9. 2.

◆ 공증인 서경배 - 소속 의정부지검

- 임명일 : 2024. 10. 4.
- 임 기 : 2029. 10. 3.까지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205호 (와동동, 윤정법조
타운) ☎ 10894
- 전 화 : 031-957-9775
- 팩 스 : 031-957-9776
- 입회일 : 2024. 11. 15.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성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가일 : 2024. 10. 4.
- 인가유효기간 : 2029. 10. 3.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윤영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2, 3층 (양재동, 모산빌딩) ☎ 06743
- 전 화 : 02-6959-9167
- 팩 스 : 02-6959-9225
- 입회일 : 2024. 12. 12.

2. 회원 탈회

(공증인 면직 및 인가취소)

◆ 공증인 이상률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7, 대영빌딩 304호 (소공동)
- 탈회일 : 2024. 1. 25.
- 사 유 : 임명공증인 사임신청서 제출

◆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제주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김승석 변호사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중앙로 308 (이도2동)
- 탈회일 : 2024. 5. 30.

- 사 유 : 사무소 해산에 따른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 방옥성

- 소 속 : 의정부지검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시청로 13, 4층 (금촌동, 백운빌딩)
- 탈회일 : 2024. 6. 30.
- 사 유 : 공증인 정년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원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김도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8층 (역삼동, 랜드마크타워)
- 탈회일 : 2024. 7. 5.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 심재훈

- 소 속 : 수원지검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248번길 101, 306호 (하동, 백현법조프라자)
- 탈회일 : 2024. 7. 24.
- 사 유 : 임명공증인 사임신청서 제출

◆ 공증인 김웅지

- 소 속 : 부산지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209호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 탈회일 : 2024. 12. 31.
- 사 유 : 공증인 정년

3. 공증사무소 이전 인가

◆ 공증인 김영범 사무소

- 소 속 : 서울북부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6, 518호~519호 (전농동, 우남SL타워300)
(구 주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8, 402호 (전농동, 대일빌딩)
- 인가일 : 2024. 1. 5.

◆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 소 속 : 수원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106호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구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102호 · 201호~202호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 인가일 : 2024. 2. 5.

◆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흥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20, 4층 406호 (무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구 주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 702호 (다동, 국제빌딩)
- 인가일 : 2024. 2. 27.

◆ 공증인 류혜민 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4, 206호 (양재동, 한신희플러스)
(구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4, 201호 (양재동, 한신희플러스)
- 인가일 : 2024. 3. 6.

◆ 공증인 이진석 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8, 802호 (청진동, 진학회관)
(구 주소) 서울 중구 수표로 45, 214호~216호 (저동2가, 비즈센터)
- 인가일 : 2024. 5. 3.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성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강

남대로 222-4, 3층 (양재
동, 메디컬빌딩)

(구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
대로 442, 5층 (역삼동, 홍국
생명빌딩)

• 인가일 : 2024. 12. 30.